

2017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

- 제16집 -



국민권익위원회

발간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에 따라 범정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조정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시키고,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반부패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여망에 따라 부패 관행을 끊고 새로운 청렴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개·공유하여 모두가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7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4,000여건의 부패신고와 2,500여건의 공익침해 행위신고건 중에서 핵심적이고 의미있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예방하는 등,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 은 정**

일러두기

『2017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은 매년 공직사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주요 사례를 정리한 16번째 자료집입니다.

본 사례집은 조사관 조사결과, 수사·감사·조사기관의 결과를 포함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금 등의 사례를 위원회 상정 순서에 따라 요약하고 정리한 사례집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보호·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공직사회에서 동일·유사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일반 국민에게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의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현재 감사·수사·조사가 진행되거나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2017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01.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
0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6
03.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7
04.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8
05. 우체국 운송업체의 운송비 편취 의혹	9
0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
07.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
08.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2
09. 지자체 보행환경 조성공사비 편취 의혹	13
10. 광해방지사업 용역계약 비리 의혹	14
11. 의료분야 연구비 부정수급 의혹	15
1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6
1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7
14.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부실시공 의혹	18
15. 공공기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 비리 의혹	19
16. 지자체 공무원의 급수 공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	20
17.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정수급 의혹	21
1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2
19.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23
2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4
21. 중소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25
22.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6
23. 여성의 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7
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8
25. 체당금 등 부정수급 의혹	29
26. 의료용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30
2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31
28.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2
29.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33
30.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34

3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5
3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6
33. 에너지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7
34.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편취 의혹	38
35. 공직유관단체의 부당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혹	39
36.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금 편취 의혹	40
3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41
38. 사회적기업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	42
39.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3
4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4
41.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5
42. 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46
4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7
44. 공립대학교의 물품관리 비리 의혹	48
45.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관련 국유지 무상 양도 의혹	49
46. 정보통신 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0
4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1
48. 중소기업융합 기술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2
49. 공공근로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53
50.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54
5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5
52.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56
53. 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57
54. 공공기관에 성능미달의 무정전전원장치 납품 의혹	58
55. 지자체 하천공사의 토석운반비 편취 의혹	59
56. 매립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편취 의혹	60
5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당 지급 의혹	61
5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62
59.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63
60. 사회서비스 바우처 비용 부정수급 의혹	64
61. 지자체 직원의 유류 절도 의혹	65
62. 도로공사비 편취 의혹	66
63.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횡령 의혹	67

64.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68
65.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69
66. 보행로 조성 공사비 편취 의혹	70
67.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71
68. 경로당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2
69.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3
7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4
71.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	75
72. 홈 IoT 등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	76
7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7
74.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78
75.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79
76.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술지 발간비용 부당수령 의혹	80
77. 국립대교수의 대학원 외국어시험문제 부정 유출 의혹	81
78.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82
79.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바우처비용 등 부정수급 의혹	83
8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84
81.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85
8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6
83.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부정수급 의혹	87
8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8
8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9
86. 공공기관 해외근로자 시간외·휴일수당 부당지급 의혹	90
87. 책임감리원의 인건비 부당 수령 의혹	91
88. 영농보상금 편취 의혹	92
89.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3
90. 문화체험행사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4
91. 지역해바라기센터 인건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95
92. 지자체 소유 지장물건 횡령 의혹	96
93. 지자체의 LED 태양광 보안등 부실시공 의혹	97
94.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98
9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99
96.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00

9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1
98.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02
9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3
100.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4
101. 공공기관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예산 낭비 의혹	105
10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06
103.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07
104.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08
105.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09
10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0
10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1
10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2
109.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13
110.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4
11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5
112. 지자체의 타일 납품 비리 의혹	116
113. 국립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7
114. 지방이전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18
115.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9
11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0
117. 영농조합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1
118. 사단법인의 공공기관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	122
119. 지방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123
120. 공공기관의 창호납품 비리 의혹	124
121. 수입대행업체의 공공기관 예산 편취 의혹	125
122.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26
123.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횡령 의혹	127
124.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	128
12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9
12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30
127. 시설원에너지 효율화 사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1
128.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32
129. 승마시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33
130.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34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01. 공단 직원의 보험료 징수 태만 의혹	137
02. 지자체의 보강토 옹벽공사 부실시공 의혹	138
03.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비 편취 의혹	139
04. 관급 아스콘 납품대금 편취 의혹	140
05. 용역업체의 공공기관 용역비 편취 의혹	141
06.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실시공 의혹	142
07.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 운영지도수당 편취 의혹	143
08. 강교(鋼橋) 도장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의혹	144
09.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자재비 편취 의혹	145
10.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등 의혹	146
11. 관급자재 납품 비리 의혹	147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01.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3
02. 「중파(AM)송신소 공사대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4
0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5
04. 「마을이장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6
05. 「비영리민간단체(○○○○연합회)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57
06. 「사회복지단체의 국가 보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8
07.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59
08. 「민간업체의 정부용역과제 연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0
09. 「자원개발 관련 국가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1
10. 「고속국도 확장 부실공사에 따른 예산 부당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2
11. 「도시철도 공사 관련 자재 및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3
12.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4
13. 「영농조합관계자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5
14.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6
15. 「지방창업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7
16. 「어린이집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8

1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69
18. 「복선전철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0
19.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1
20. 「광고물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2
21.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3
22. 「공공기관 직원 금품수수 및 납품비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4
2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5
24. 「지하수 자원관리사업 사업비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6
25.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7
2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8
27.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79
28. 「국가과제사업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0
2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1
30. 「노인요양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2
31. 「영화제작지원 자치단체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83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01. 「국유지 불법전대에 의한 예산낭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87
0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88
03. 「공공기관 주차관리용역 입찰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89
04. 「우체국 위탁운송업체의 운송비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90
0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91
06. 「지방이전기업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92
07. 「정보화사업 외주업체로부터 편익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193

제3장 공익신고 사건

01.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혹	197
02. 어린이집 부실 운영 의혹	198
03. 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199
04. 공동주택 행위허가 위반 의혹	200
05. 도장업체의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의혹	201

06.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혹	202
07. 무허가 건축 의혹	203
08. 건축물 불법 증축 의혹	204
09.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의혹	205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혹	206
11. 식품 과대광고 의혹	207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의혹	208
13. 무허가 건축 의혹	209
14. 도로구역 불법 건축 및 쓰레기 소각 의혹	210
15.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 위반 의혹	211
16.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212
17.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 및 위험물 보관 위반 의혹	213
18. 산지 및 농지 불법전용 의혹	214
19.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의혹	215
20. 성인용기저귀 안전확인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	216
21. 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신고 미이행 의혹	217
22.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표시 위반 의혹	218
23. 저수지 개보수공사 부실시공 의혹	219
24. 폐열보일러 개조검사 미이행 의혹	220
25.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 불법 하도급 의혹	221
26. 무허가 축사 건축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 의혹	222
27. 개인정보 파기 위반 의혹	223
28.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의혹	224
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및 목적 외 사용 의혹	225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보호]

01. 「아동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31
02. 「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232
03. 「의료법 위반」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233
04. 「불법공산품 제조·수입·판매」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234
05. 「입찰담합」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235

[공익신고자 보상]

0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239
02.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0
03. 「위탁급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1
04. 「축산물 가공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2
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게임기 설치·운영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	243
06.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4
07. 「무자격자 건축물 시공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5
08. 「항공기 운항기술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6
09.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7
10.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8
11. 「비산먼지 억제조치 소홀」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9
12. 「산림 무단 벌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0
13. 「가짜 석유제품 보관·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1
14.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2
15.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3
16.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4
17. 「무허가 가축 도살」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5
18. 「양곡 정보 거짓 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6
19.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7
20. 「고압가스 제조자 안전관리자 선임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8
21.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9
22. 「하천 무단점용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0
23. 「부동산 거래계약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1
24.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2
25. 「부당 고객유인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3
26.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4
27. 「위조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5
28. 「의료기관 유사명칭 사용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6
29. 「의료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7
30. 「환자 유인을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8
31.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9
32.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0

33.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1
34. 「산업재해 미보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2
35.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3
36. 「액화석유가스 판매 안전유지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4
37. 「전기공사 표지 미 게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5
38. 「소하천 무단점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6
39. 「미등록 직업소개소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7
40. 「중요정보 표시·광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8
41. 「부당 고객유인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9
42. 「식품접객업자의 불법 티켓 영업 알선행위」건 관련 보상금 기각	280
43.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1
44. 「보건관리자 업무 지정한계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2
45. 「영업비밀 누설·취득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3
46. 「폐기물 불법 매립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4
47.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5
48.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건 관련 보상금 기각	286
49.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기각	287
50.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8
51.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289
52. 「기관 석면조사 미실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0
5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1
54. 「산지 불법전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292

[공익신고자 포상]

01. 「식품의 보존 및 제조 기준·규격 위반」건 관련 포상금 지급	295
02. 「의약품등의 제조 및 생산 관리의무 위반」건 관련 포상금 지급	296
03. 「선박용 물건 정비인력 지정요건 미달」건 관련 포상금 지급	297

[공익신고자 구조]

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301
--	-----

제5장 참고자료

0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305
0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310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 1 2017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국민권익위원회

| 제1장 | 부패행위 신고사건

2017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국민권익위원회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2. 경 ~ 2016. 경 ○○군 등으로부터 농산물 선별장과 막걸리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보조금 약 14억 원을 지원 받아 완공한 후, 시설을 임대해 주거나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막걸리를 생산하지 않는 등 보조금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군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농산물 선별장 등을 구축한 후,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임대해주고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원료로 한 쌀막걸리 생산을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불법 임대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배한 혐의로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
 - ※ 통보일자 : 2017. 4. 11.
 - ○○도 조사결과, 담당공무원 3명 주의조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 3억 3,656만 원 회수 요구
 - ※ 통보일자 : 2017. 7. 6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22조, 제31조·제41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임대관련 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 등과의 협약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수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2. 7. 6.부터 2015. 10. 31.까지 총 1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등 약 1억 6,0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4. 18.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인건비 등 횡령 혐의 확인되어 재정상 환수조치 및 신분상 중징계 처분
※ 통보일자 : 2017. 5. 11.
 - ○○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참여 연구원들의 진술, 계좌내역서, 정산서류 등

분과 2017-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요양원 대표로, 2014. 1.부터 2016. 8.까지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시간제 근무자 등을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1.부터 2016. 8.까지 1명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였고, 시간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등 2명과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를 종일근무자로 허위 등록하였으며, 요양보호사 등 7명을 조리업무 등 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간호조무사 등 2명을 사무업무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4억 3,994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광역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4억 3,994만 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4. 12.
 - ○○광역시, ○○공단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광역시와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43조
- 착안사항 : 근무기간, 진술기록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요양원, ○○센터 시설장으로, 2013. 8.부터 2016. 8.까지 요양원 입소자의 퇴사일과 서비스 제공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허위 등록하였고, 요양보호사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센터 방문목욕서비스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고, 2016년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비 지출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생계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3. 1.부터 2016. 8.까지 요양원 입소자의 퇴사일과 서비스 제공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허위 등록하였고, 요양보호사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도 감산 없이 청구하였으며, 방문목욕서비스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988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6. 2.부터 2016. 7.까지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6명의 생계급여 중 일부를 목적 외로 부적절하게 지출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생계급여 비용 약 83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공단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43조
- 착안사항 : 근무기간, 진술기록

우체국 운송업체의 운송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우편물을 운송하면서 차량 용적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운송비를 편취하였고, 담당자는 이를 묵인 또는 결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운송확인서상 차량 용적 허위 기재 및 차량번호 허위 등록 행위를 통한 운송비 편취 행위가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운송비 편취행위가 확인되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4. 13.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및 담당자 징계 조치
※ 통보일자 : 2017. 2. 28.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 착안사항 : 운송 확인서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용하면서 2013년경부터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자가용 차량과 지게차 등에 주유하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자가용 화물차에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하고, 동일한 주유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2차례에 걸쳐 주유한 기록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고사실과 같이 자가용 화물차 등에 주유 시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8. 17.
 - ○○광역시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1,242만 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통보일자 : 2018. 1. 8.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광역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 종합검사 내역 등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2016. 3.부터 2016. 11.까지 직원들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거나 상담수당을 부풀려 정산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종사자들 명의의 통장을 제출받아 ○○시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해당 통장으로 입금한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380만 원을 편취하고, 1372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3,211만 원을 허위 청구한 후 해당 수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위원회,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4. 19.
 - ○○위원회 조사결과, 회계처리방식 개선 조치 통보
※ 통보일자 : 2017. 3. 15.
 - ○○시 조사결과, 해당 단체 서면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 통보일자 : 2017. 4. 2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위원회,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22조·제62조
- 착안사항 : 통장거래내역, 참고인 진술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월 250~30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조카, 동생 명의로 받으면서 소득을 숨기고 보장기관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4,047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5인 가구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던 중,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월 250만 원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장기관을 속여 동 기간 총 4,047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사업주 명의 통장기록, 업주 확인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지급 내역 등을 통해 약 4,047만 원을 부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7. 6. 28.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중지 처리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되, 생활 여건을 감안하여 분할 환수 처리(매월 10만 원)
※ 통보일자 : 2018. 1. 2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49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내역, 진술기록

지자체 보행환경 조성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자체가 발주한 보행환경 조성공사와 하천 정비사업에 하수급인으로 참여하여 설계 내역보다 단가가 낮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일부 자재비용을 중복 계산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약 1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공사 시방서상 규정된 자재 대신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고 사용된 자재의 처리비용을 중복 계산하는 수법을 통한 약 1억 원의 공사비 편취가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 착안사항 : 공사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광해방지사업 용역계약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자들로서, 광해방지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유착하여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미등록된 사실과 부적정한 수의 계약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 주의 처분
※ 통보일자 : 2017. 11. 24.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방지법 등
- 착안사항 : 계약 사실 내역 등

의료분야 연구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2.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0. 5.경 ~ 2015. 10.경 ○○진흥원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개인용으로 사용한 식대나 교통비 등을 연구비로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래 근무자들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속여 등록하고 이들에게 인건비, 연구수당 등 약 1억 1,500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하고, 또한 개인용으로 사용한 식대나 교통비, 재료비 등 약 2,100만 원을 연구비로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 3,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약 2억 6,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9. 18.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서, 관련 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2.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년부터 ○○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물품공급 업체와 공모하여 과제수행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후 연구개발 과제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면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빈 양식으로 요청하는 수법으로 정산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금액미상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하고, 피신고자의 잔금 1,010만 원을 270만 원, 500만 원, 240만 원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의2·제40조
- 착안사항 : 연구과제 수행협약서, 재료비 집행내역, 정산자료, 세금계산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2.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자재비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수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진흥원 등과의 협약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실물사진만 전송받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자재비를 편취하는 등 약 2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1. 23.
 - ○○부,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세금계산서, 계좌내역서, 정산서류 등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7. 2.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사비를 이중 수령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성토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설계내역대로 미시공 및 허위의 준공서류로 공사비 8,494천 원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공사비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 23.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담당자 징계 및 관련 공사업체에 벌점 부과, 재시공 조치
※ 통보일자 : 2017. 12. 2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 착안사항 : 공사 시방서, 공사 내역서 등

공공기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공기관이 토목용 보강재 시중가격 조사 미실시, 1억 원 이하 분할 수의계약, 특정 규격을 설계서에 넣어 수의계약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관련 사업의 현장 조사 결과, 시중가격 조사 미실시, 분할 계약, 특정규격 제시 등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시,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시, ○○도 조사결과, 해당 사업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담당 공무원 징계 조치
※ 통보일자 : 2017. 5. 24. - 2018. 1. 9.
 - ○○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시,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사업 계약서 등

지자체 공무원의 급수 공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지자체 공무원인 피신고자가 직무 관련자인 관내 급수공사 대행업자로부터 뇌물 967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급수공사 발주 내역 및 피신고자의 예금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발주업체로부터 1,052만 5천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뇌물 수수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7. 12. 14.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뇌물 수수 사실이 확인되어 파면 조치
※ 통보일자 : 2017. 11. 9.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급수 공사 발주 내역, 예금 거래 내역서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경~2016.경 ○○진흥원에서 지원 받은 정책자금 등 약 4억 원으로 과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부정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평소 거래해오던 쇼핑몰 직원 3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횡령하고, 회사 일반 직원 33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속여 연구원 인건비 약 1억 5,500만 원 상당을 부정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거나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4,982만 원을 횡령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7. 9. 22.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지원금 지급 및 정산내역서, 관련 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년부터 ○○청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 중국법인과 공모하여 해외수요처 구매의향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계측기 렌탈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구매한 계측기를 임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으며, 연구원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8,500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업체 이사와 계측기 렌탈업체 과장이 계측기를 렌탈하는 것처럼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를 6회에 걸쳐 550만 원씩 총 3,300만 원을 상계처리 하자고 공모한 사실과, 피신고자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월 90만 원씩 4개월간 총 360만 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7. 25.
 - ○○청 조사결과, 2,850만 원 정산불인정 확정·종결처리 예정
※ 통보일자 : 2017. 9. 12.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의2·제40조
- 착안사항 :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구매의향서, 장비 임대계약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년 3월부터 제조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회사 동료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1,0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3인 가구로 2015년 12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던 중,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총 1,284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군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군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처리, 1,284만 원 환수 조치(10회 분할 납부)
※ 통보일자 : 2018. 1. 3.
- 위원회 검토의견
 - ○○군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49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내역, 진술기록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대표로, 어린이집에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2명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2~3개월 근무한 1명을 2011년 6월~2012년 3월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약 96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1명을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약 2,812만 원을 편취하는 등 약 3,772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약 3,772만 원, 어린이집 폐쇄, 보육교사 1명 자격취소, 해당기간 경력 삭제
 - ※ 통보일자 : 2018. 1. 2.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제40조
- 착안사항 : 근무기간, 진술기록

중소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 3.경 ○○공단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지원금을 수령하며 허위로 학습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총 1,020만 원의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공단 조사결과, 지원금 967만 원 환수 및 담당자 인사조치(경고)
※ 통보일자 : 2017. 5. 26.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보조금법 제22조·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매출전표, 학습서류 허위 작성 내역 등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 3. 21. ○○구청과 '사회적기업 ○○ 지원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다른 회사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구청으로부터 지원금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전문 인력으로 신청하여 2016. 6. ~ 2016. 12.까지 인건비 1,400만 원을 부정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7. 14.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22조·제40조
- 착안사항 : 전문인력 지원사업 협약서, 참고인 진술 등

여성의 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2.경부터 2016.경까지 ○○시로부터 '○○여성의 집'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입소자 및 상근직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3. 1. ~ 2016. 4.까지 시설 내 다른 종사자의 명의로 야간 당직 수당을 신청한 후 해당 종사자들로부터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800만 원의 야간 당직 수당을 되돌려 받고, 2012. 1. ~ 2016. 11.까지 시설 입소자들의 퇴소 신고를 평균 2 ~ 5일 늦게 처리하는 수법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고, 2015. 12. ~ 2016. 4.까지 상근하지 않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19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7. 20.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정수금액 1,313만 원 환수결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 통보일자 : 2017. 6. 5.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보조금법 제22조·제40조
- 착안사항 : 당직수당 지급내역, 퇴소신고기록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 2는 ○○센터 센터장과 활동보조인으로, 공모하여 피신고자2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주말에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2014. 11. ~ 2016. 12. 피신고자2가 주말(토·일)에 실제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2,197만 원의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2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근무기록지를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6. 29.
 - ○○광역시 조사결과, 피신고자2는 수급자와 공모하여 2014. 11. ~ 2016. 12. 주말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기에, 제공기관은 주의조치, 피신고자2는 자격정지, 수급자는 활동지원 급여제한, 부정수금액 2,198만 원(이자 52만 원 별도)은 환수
※ 통보일자 : 2017. 10. 3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광역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7조
- 착안사항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및 내역 등

체당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임금체불이 없는 수십 명에게 체당금을 신청토록 하여 부정수급을 공모하고, 업체 실제 대표임에도 근로자로 근무했던 것처럼 속여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체당금을 타낼 목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내역이 없는 24명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신청하게 하여 약 1억 6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하고, 사업주로서 실질적 경영을 담당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업체에서 재직했던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구직급여 약 366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8. 21.
 - ○○부 조사결과, 24명의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여 기소의견(구속 1명)송치하고, 피신고자들의 실업급여 편취 사실을 적발하여 1,697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8. 1. 22.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 착안사항 : 허위 신청자 명단리스트, 교육자료, 녹취록 등

의료용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분과위원회(2017. 3.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 12.경~2016. 11.경 ○○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1억 5,730만 원을 지원 받아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부정하게 지급하거나 회사에서 사용할 장비와 사무용품을 연구비로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회사 생산실무자, 영업실무자 등 5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속여 인건비를 부정하게 지급하거나 회사 일반제품 생산을 위해 구입한 장비와 시험 검사비, 회의비 등을 연구비로 정산하는 수법으로 총 6,32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동일 건으로 이미 다른 경찰서에 고발되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받았으므로 혐의 없음
 - ※ 통보일자 : 2017. 12. 5.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지급 정산내역서, 인건비내역 및 재료 구매 관련 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분과위원회(2017. 3. 3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수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 약 수십억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2008. 11. 1.부터 2015. 4. 30.까지 ○○협회 등 4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개인 위장업체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연구비를 송금한 뒤 이를 되찾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26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부,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7. 7. 17.
 - ○○부, ○○부, ○○부,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등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세금계산서, 계좌내역서, 정산서류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3. ~ 2016. ○○부로부터 ‘○○일자리희망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고, 강의료를 지급 후 협회 자부담 통장으로 반납 받아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부로부터 ○○일자리희망센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하위로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종사자 인건비 5,063만 원, 강사료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162만 원, 2013.경부터 2016. 경에 지급 목적 외 사용된 부동산 임대료 약 2,981만 원 등을 포함한 총 8,206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0. 30.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과금 1억 5,023만 원 환수 통지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조치
※ 통보일자 : 2017. 8. 18.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보조금법 제22조·제40조
-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부동산 임대료 지급내역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2016. 7.경 총 22억 원 규모의 ○○콘텐츠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을 허위 등록한 후 수개월 동안 연구개발 인건비 수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16. 6.경 퇴직한 직원을 포함하여 총 23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144회에 걸쳐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4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 회사 조직도, 내부 이메일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노인요양원 대표자로, 2012.부터 2015.까지 차량운행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를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요양보호사로 주 5일-일 8시간-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고, ○○○를 2012. 9. 1.부터 2014. 7. 15.까지 요양보호사로 주 5일-일 8시간-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억 9,884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4명에 대하여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7. 19.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25일 행정처분
※ 통보일자 : 2017. 5. 30.
 - ○○공단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43조
- 착안사항 : 근무기간, 진술기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6. 4.경부터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개인 화물차량 및 승용차량에 주유하고도 유가보조금 지급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화물자동차 주유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동일한 주유소에서 짧은 시간 내(1분 ~ 3시간)에 2차선에 걸쳐 주유한 다수 기록과 약 1년간 주행거리 대비 총 주유량으로 산출한 연비(3.48km/ℓ)가 통상 5톤 이하 화물자동차 연비(6km/ℓ)에 비추어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 종합검사 내역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2012년경부터 사무실에 유류구매카드와 주유장부 비치 후 주유 시 장부에 주유내역을 기재하고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여 금액 미상의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과 피신고자들의 화물자동차 주유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동일한 주유소에서 짧은 시간 내(1분 ~ 3시간)에 2차례 주유한 기록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차량(1t, 2.5t)의 주유탱크 용량 (65ℓ, 100ℓ) 초과주유 기록이 확인되고 해당 차량들의 연비(1.32~2.85km/ℓ)가 통상 화물자동차 연비(8~10km/ℓ)에 비추어 훨씬 미치지 못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시,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2. 12.
 - ○○시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603만 원 환수와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통보일자 : 2018. 1. 8.
 - ○○시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512만 원 환수와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통보일자 : 2018. 1. 8.
 - ○○도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1,389만 원 환수와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통보일자 : 2018. 1. 10.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시,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 종합검사 내역 등

에너지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2013.경부터 2016.경까지 ○○공단으로부터 지열 및 태양광 등 설치에 따른 시공 업체로 선정되어 ○○시 등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8개 업체에게 불법하도급하여 시공도록 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3.경부터 2016.경까지 ○○공단으로부터 지열 및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관련 설비 설치공사를 하면서 8개 업체에 총 460건의 불법하도급 공사를 주는 수법으로 약 30억 원 상당의 에너지 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지원금 지급 정산내역서, 공사내역서 및 관련자료 등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7. 4.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톱밥배지분양센터 운영 등 보조금 약 31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허위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국가보조사업 2건을 수행하면서 사업비 허위정산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약 3억 8,5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종결
※ 통보일자 : 2017. 11. 27.
 - ○○부,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보조금 사업 집행 내역서 등

분과 2017-91호

공직유관단체의 부당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혹

2분과위원회(2017. 4.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입찰시방서에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을 끼워 넣어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을 규정해야 함에도 입찰공고문이 아닌 시방서에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을 규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당 계약이 확인되어 담당자(2명) 징계 및 관리감독자(1명) 경고 조치
※ 통보일자 : 2017. 6. 16.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계약 공고문, 계약 내역서 등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력 감축 이행률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전력 감축 목표량 자료를 제출하여 감축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로 약 5억 원의 정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허위의 고객기준부하(CBL)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시험을 통과하고 약 5억 원의 정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 17.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고객기준부하 자료, 정산금 내역서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청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연구원들에 대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고,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총 8,840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재입금 받는 방법으로 7,856만 원, 협력업체와 공모하고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174만 원, 합계 9,03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인건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2. 7.
 - ○○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사회적기업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지원금 약 1,500만 원과 장려금 약 4,7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사회적기업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후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1,500만 원과 장려금 4,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2. 29.
 - ○○부 조사결과, ○○사업의 경우 참여제한자를 참여시킨 위반 사실이 확인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경고처분하고, 장려금의 경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체 종결처리
※ 통보일자 : 2017. 12. 2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출근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분과 2017-99호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4.경 ○○진흥공단 시행 ○○조합 활성화 사업 신청요건인 협업화 교육 이수율을 허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약 3,5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운영하는 ○○조합의 조합원 수는 101명으로 추산되나 조합원 수를 17명으로 낮추어 교육 이수율을 14%에서 82%로 허위 조작하여 ○○조합 활성화 지원금 3,5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 통보일자 : 2017. 7. 21.
 - ○○청 조사결과, 사업절차 미준수에 따른 경고조치
※ 통보일자 : 2017. 9. 1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활성화 지원금 결산서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4.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4. 5.경부터 2016. 12.경까지 특별활동담당 및 보조교사를 만 2세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육교사 수당과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5.경부터 2016. 12.경까지 특별활동담당 및 보조교사를 만 2세반과 만 1·2세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육교사 수당 및 기본보육료 등 2,236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5. 17.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 착안사항 :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단으로부터 지원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7억 7,251만 원의 투자계획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금액을 부풀려 피신고자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억 7,125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투자계획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피신고자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1억 7,12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도 다수의 거래업체에서 피신고자의 통장으로 정체불명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편취 의혹이 상당하므로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1. 10.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정수금액 3억 7,500만 원 환수, 지원사업장 선정 취소
※ 통보일자 : 2017. 11. 10.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내역 등

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 등 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4.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창장년 인턴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신고업체에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3명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으로 속여 인턴지원금 등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파신고자는 기존 근로자 6명을 인턴으로 새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8. 4.
 - ○○부 조사결과, 5명을 인턴으로 새로 채용한 것으로 속여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2,700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7. 7. 1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계좌내역 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 집의 시설장으로, 자신의 시간외 근무내역을 조작하여 시간외 수당을 부정수급하거나 입소자의 퇴소일자를 허위로 늦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자신의 출근부 및 시간외 근무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인건비 9,180만 원을 편취하고, 2012.부터 2016.까지 입소자의 퇴소일자를 지연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131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9,31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지방재정법 제32조·제97조
- 착안사항 : 출근부, 시간외 근무일지 등

공립대학교의 물품관리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학교 내 물품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15개 실험실습 기자재의 담당자를 특정인으로 임의 변경함으로써, 3억 6천만 원 상당의 변상책임을 모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13,659천 원 상당의 물품 10개를 망실하고, 수년간 허위로 실험실습 기자재 25건을 구매하여 302,366천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부적정한 물품 관리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 및 52,204천 원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 2018. 1. 23.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 착안사항 : 물품관리 내역서 등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관련 국유지 무상 양도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재개발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불법 변경하고, 차안센터 부지인 국유지를 재개발조합에 불법 무상 양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재개발조합이 유상 매입해야 하는 국·공유지를 유상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 변경 요청을 부당하게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 착안사항 : 사업 시행서, 국공유지 관리 내역서 등

정보통신 사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청 등으로부터 수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속이거나 평소 거래해오던 업체로부터 컴퓨터용 재료 등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연구 인력 등을 속여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후, 연구비 수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약 1억 원, 연구재료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연구에 참여 하기 위해 제안서를 허위 작성하고 5,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총 3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종결
※ 통보일자 : 2017. 9. 5.
 - ○○부, ○○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지급 정산내역서, 인건비 및 재료비 사용내역 자료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년 6월경부터 7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돈을 송금한 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 6. 24.부터 2018. 6. 23.까지 ○○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16. 9. 5. 거래업체로부터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장비를 구입한 후 과제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하는 등 약 1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9. 13.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세금계산서, 정산서류 등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과제 용도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사업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받거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약 1억 1,687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9. 5.
 - ○○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연구개발재표비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등

공공근로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공공근로 급여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양성교육을 받거나 일반업체에서 일을 했음에도 공공근로시간을 허위 보고하여 수천만 원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3.경부터 2015. 9.경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대학교에서 사회 복지사양성교육을 받거나 일반사업체에서 일을 했음에도 공공근로를 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보고하여 공공근로 급여 및 수당 약 1,56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9. 1.
 - ○○도 조사결과, 공공근로 인건비 부정수금액 497만 원을 환수조치, 공공근로 관리감독 소홀로 담당공무원 주의 조치
* 사회복지사양성교육은 공적사유(직업훈련)로 월20시간에 한하여 인정
※ 통보일자 : 2017. 10. 10.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착안사항 : 공공근로 급여 내역, 상별위원회보고서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노인요양원 대표로, 2013. 1.부터 2017. 2.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고, 요양보호사인 자신과 조리원이 실제 월 근무시간이 부족함에도 매월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3. 1.부터 2017. 2.까지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원의 종사자(간호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약 3억 725만 원, 등급외자 정원초과기준 위반으로 약 3,442만 원, 필요인력(조리원) 추가배치기준 위반으로 약 8,702만 원, 당월서비스 미제공 수급자 거짓청구로 약 4,498만 원 등 총 약 4억 7,368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9. 7.
 - ○○도, ○○공단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43조
- 착안사항 : 근로현장, 근로소득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5.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 2는 공모하여 2016.5.부터 2017.3.까지 어린이집 행정교사를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간연장반 이용 아동의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간연장반 교사인건비 약 1,830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2가 2016. 6. 월차 휴가를 낸 것으로 출근부에 기록된 날 14:00부터 21:30까지 7시간 30분 동안 각각 시간연장반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피신고자2를 시간연장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6. 5.부터 2017. 3.까지 11개월 동안 시간연장반 교사인건비 1,830만 원을 지원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7. 13.
 - ○○광역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광역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의2·제40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1조·제38조
- 착안사항 : 통장 입출금내역서, 복지수당 지급내역,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내역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6.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며 월평균 180만 원의 급여를 받음에도 이를 속이고 2014. 6.부터 2017. 4.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로서 2014. 6.부터 2017. 4.까지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매월 약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속이고 총 1,677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1. 21.
 - ○○시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어 총 1,677만 원 환수결정
※ 통보일자 : 2017. 8. 2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 착안사항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내역, 피신고자 확인서 등

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6.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들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 등 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들은 2014.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청년인턴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신고업체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3명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 등 약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내사 종결
※ 통보일자 : 2017. 11. 2.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의 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재조사 요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급여지급명세서, 근무내역 등

공공기관에 성능미달의 무정전전원장치 납품 의혹

2분과위원회(2017. 6. 1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기관에 무정전전원장치를 납품하면서 계약에 따라 고효율인증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나 트랜스타입의 성능미달 제품을 납품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대학병원 2곳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상 성능에 미달하는 일반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위해 조달청에 통보, 그 외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 및 경고 처분
 - ※ 통보일자 : 2017. 10. 23.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물품납품 내역서, 제품 인증규격서 등

지자체 하천공사의 토석운반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6.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들은 하천 환경조성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을 공사 현장에서 근거리인 곳에서 운반하고도 마치 원거리에서 운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토석운반비 약 4,9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들이 하천 환경조성공사의 토석을 3.8km 떨어진 곳에서 운반하고도 19.5km 떨어진 곳에서 운반한 것처럼 운반대금을 과다 청구해 8,10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파신고자 1명의 토석 운반대금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0. 10.
 - ○○도 조사결과, ○○시 감독공무원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과다 지급된 운반비 81,048천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7. 10. 1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지방계약법 등
- 착안사항 : 토석운반 일지, 토석운반 정산 내역서 등

매립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6.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자체가 발주한 매립폐기물 선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연성 폐기물 선별공사를 일부 미시공하고 압축포장 작업 내역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관련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폐기물 압축·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폐기물 약 1,338톤을 처리한 것처럼 작업 일보와 압축Bale 계근표를 조작하여 사업비 약 3,500만 원을 편취하고 일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1명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1. 22.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착안사항 : 공사 작업일보, 계근 내역서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당 지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6.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부풀려 대행사업비를 과다 지급하고, 대행계약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대행업체가 「옹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청소차량 감가상각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대행업체에 29,262천 원의 대행사업비를 과다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과다 지급한 사업비 63,848천 원 환수 예정 및 업무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 및 훈계 조치
 - ※ 통보일자 : 2017. 10. 17.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사업비 정산 내역서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6.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구청에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 검임으로 보고하였음에도 담임 반 보육을 하지 않고 담임 반 아동을 다른 보육교사의 반에 정원 외 초과보육 하였으며, 시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 아동을 보육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금액미상의 보육교사 인건비 및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2012. 3.부터 2017. 2.까지 어린이집에 상주하지 않고 자신의 담임 반 아동을 다른 보육교사 반의 정원 외 초과보육을 시키면서 정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및 보육료 약 1억 8,599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인건비 및 보육료 1억 1,000만 원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8. 1. 5.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54조,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보육료, 시간연장반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6.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진흥원 등에서 발주한 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관 대표로 수개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연구비 사용 자료를 과제 간 중복으로 증빙하는 방법과 검수보고서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금액미상의 정부출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전자우편을 통해 거래업체 대표와 8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계획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수의 과제를 동시 수행하면서 연구비 사용 증빙 자료를 중복으로 증빙하는 방법 등으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약 4,248만 원 부정수금액 확인, 편취 금액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5년 예정
※ 통보일자 : 2018. 1. 8.
 - ○○부, ○○청, ○○시 조사결과, 허위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예정
※ 통보일자 : 2017. 9. 1, 2017. 9. 18, 2017. 12. 22.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부, ○○청,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내역, 검수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6.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 2는 공모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등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서비스이용자 가족들에게 바우처 카드 30여장을 허위 발급받게 한 후 실제 상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 2는 서비스 이용자가 소지해야 할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제공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30여장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총 4,712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3명을 사회서비스이용법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1. 2.
 - ○○광역시 조사결과, 고발조치 및 ○○○클리닉 영업정지 6개월 외 8,228만 원 환수, ○○클리닉 경고 및 102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7. 12. 1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광역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1조·제38조
- 착안사항 : 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 입출금내역

지자체 직원의 유류 절도 의혹

1분과위원회(2017. 7.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년부터 2016. 11.경까지 ○○시청 전기실 내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등 경유를 절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피신고자가 비상발전기에서 경유를 훔쳐가는 장면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발전기내 경유(120L) 절취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9. 8.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블랙박스 동영상 등

도로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7.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설공단 등이 발주한 3건의 공사에서 설계량보다 배합자재를 적게 사용하고 자재비를 과다하게 수령하는 수법으로 약 4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발주처의 자재 수급량 및 기성금 지급내역, 배합자재 공급업체의 거래명세서를 통해 총 468,415천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자재 거래내역서, 발주처 정산내역서 등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7. 7.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 2013년경 부터 2017년경 까지 수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에게 급여통장을 만들도록 하여 이를 선임연구원이 관리하도록 한 후, 참여 연구원들에게는 매달 급여 명목으로 일부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3. 5. 1.부터 2017. 6.경까지 총 사업비 25억 원 규모의 1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매달 약 2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인건비의 약 30%만 지급하고, 나머지 약 6억 원 상당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착안사항 : 인건비 계좌내역서, 참여 연구원들의 진술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7.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노인복지센터 대표로, 2016. 10.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한 것을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한 것으로 조작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하여 각각 2015. 8. 20.부터 2016. 10.경 까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약 7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여 급여비용 가산을 받았으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496만 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총 503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공단 송부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비율이 0.45%이고, 사회복지사의 근로사실이 확인되어 종결
※ 통보일자 : 2017. 9. 7.
 - ○○공단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43조
- 착안사항 : 근로현장, 진술기록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7.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서,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평균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1,429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월 평균 소득 160만 원을 받고 있음에도 해당 보장기관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총 1,045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9. 21.
 - ○○시 조사결과, 생계급여 1,045만 원 징수
※ 통보일자 : 2018. 1. 10.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착안사항 : 사실관계 확인점검

보행로 조성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7.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행로 조성공사 시 공사 자재인 각형각관의 단가를 부풀리고, 잡철물 제작비용과 용융아연도금 처리비용을 중복 산정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가 보행로 조성공사 시 자재단가를 부풀리고 용접비용을 중복신청하는 수법으로 약 2억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시,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시,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시,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공사 작업일보, 정산내역서 등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7.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진흥원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생산설비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설치 업체로부터 시스템 구축비 수천만 원을 되돌려 받아 편취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한 장비와 재료비용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업체에게 구축비용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300만 원을 편취하고, 연구원 인건비, 장비 및 재료비 등 총 7,053만 원을 허위정산 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청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지급 정산내역서, 인건비 및 재료비 구입현황 관련자료 등

경로당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7.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2009. 7.경부터 2016. 3.경까지 ○○아파트 경로당 전 회장으로, 경로당에 중식도우미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속여 수백만 원의 경로당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2. 6.경부터 2016. 3.경까지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처음 1개월 정도만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중식도우미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중식도우미 계좌를 통하여 920만 원의 경로당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중식도우미 업무일지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7.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 2는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피신고자2를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수천만 원의 인건비 등을 편취하고, 피신고자2의 아들을 위 어린이집 원아로 허위 등록하여 수백만 원의 보육료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 2는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7. 2.경까지 피신고자2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1,7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같은 곳에서 양육하고 있는 피신고자2 아들을 원아로 허위등록하여 344만 원의 보육료를 편취하는 등 총 2,044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 착안사항 : 어린이집 근무일지, 현지 활동 기록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7.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7. 5.경 교재·교구를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으로 속여 교재·교구비를 부정수급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하여 실제 매일 4~5시간 정도 근무하였음에도 매일 기준근무 시간인 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출근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하여 매일 4~5시간 근무하였음에도 매일 기준 근무시간인 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출근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약 933만 원, 근무환경개선비 130만 원, 처우개선비 91만 원 등 총 1,15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2. 26.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8조
- 착안사항 : 근로현장, 근로소득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8.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4.경 총 2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부출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12곳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총 20회에 걸쳐 연구개발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 7,0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세금계산서, 정산서류 등

홈 IoT 등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8.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3. 9.경부터 2017. 2.경까지 수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연구 자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3. 9. 1.부터 2017. 2. 28.까지 총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명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총 93회에 걸쳐 인건비 약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5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참고인들의 진술, 회사 조직도, 계좌내역서 등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8.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1.경부터 2016. 9.경까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겸 법인산하 요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원의 시간외근무 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하고, 법인산하 학교직원을 법인 사무원으로 전담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1.경부터 2016. 9.경까지 요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간외 근무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1,7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밖에도 법인이사장으로 재직 시 학교 직원을 법인 사무원으로 전담시키고도 학교로 지원된 인건비 등 사회복지시설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학교 직원에게 법인사무를 전담하게 하고 학교에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총 9,984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7. 9. 11.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시간외근무 확인서, 조사결과보고서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8.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요양원 대표로, 2016. 2. 22. 퇴사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같은 달 요양보호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달 29일에 퇴사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 2. 22. 퇴사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같은 달 요양보호사 월 기준 근무시간(주 5일-일 8시간-월 160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9일에 퇴사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 청구하여 약 413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광역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광역시 조사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비율이 0.29%로 행정처분 해당사항 없어 종결.
※ 통보일자 : 2017. 9. 28.
 - ○○공단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광역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43조
- 착안사항 : 근로기간, 진술기록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8.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2.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진흥원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회사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한 장비와 재료비 등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여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2.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3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약 8,820만 원, 연구재료비 및 장비구입비 약 2억 1,48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총 3억 301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지급 정산내역서, 인건비 및 재료비 사용내역 등 자료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술지 발간비용 부당수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영문학술지의 발간비용 중 1,620만 원을 편집장 수당 명목으로 부당 수령하고, 대학교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 활동비 516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영문학술지 발간을 보조하는 행정간사 인건비 및 영문원고 편집수당과 ○○대학교 지원금 중 36개월간 매월 45만원 씩, 총 1,620만 원을 편집장 수당 명목으로 부당 수령하고 소속 대학교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받은 공동연구과제 연구보조원 활동비 516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예금 계좌 내역서, 연구과제 내역서 등

국립대학교수의 대학원 외국어시험문제 부정 유출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수년간 ○○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 입학 시험문제를 특정인에게 유출하고 시험성적을 조작하며 자격미달인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가 수년간 ○○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 입학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특정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입시 시험지, 시험성적서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5.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진흥원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회사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한 재료비 등을 연구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고, 학교 장비사용료를 낮춰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2.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약 7,023만 원, 연구재료비 약 2억 15만 원, 대학소유 장비 등을 이용하고 납부한 장비사용료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지급 정산내역서, 인건비 및 재료구입 현황, 관련자료 등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바우처비용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안마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안마사의 ID를 도용하여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바우처비용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5.경부터 2016.경까지 동 안마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안마사의 ID를 도용하여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약 9,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는 2015. 2.경부터 2017. 6.경까지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상자들을 통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후 안마서비스 등록 제공인력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 25.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착안사항 : 바우처 결제 현황, 직원명부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지원금 2,149만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연구개발이 실패하자 지인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빌려 연구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여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 11. 1.부터 2017. 1. 31.까지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연구개발이 실패하자 타사의 상용제품을 마치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것처럼 지인회사로부터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의 사업결과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는 보조금 2,149만 원의 환수조치를 피하기 위해 시판중인 제품의 라벨을 바꿔 붙여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속여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7. 11. 29.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37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내역, 결과보고서 등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등 여러 공공기관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체가 없는 피신고자 처 명의의 회사와 위장거래를 통해 보조금을 횡령하고, 직원의 계좌에 입금된 출연료를 임의로 관리하며 인건비를 횡령하였으며,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금액미상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3.경부터 총 17건의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체가 없는 회사와의 위장거래로 5,389만 원을 횡령하고, 소속 근로자의 출연료를 정상 지급한 것처럼 속여 실제로는 정해진 임금만 주는 수법으로 1,289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79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256조·제347조, 보조금법 제22조·제40조
-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보조금 사업 수행내역 등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 1.부터 2017. 6.까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식자재 비용 및 인쇄비를 과다하게 결제한 후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식바주유비 등 복지관 예산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으로 직원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업무추진비 117만 원, 유류비 70만 원을 각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제97조
- 착안사항 : 사업비 집행내역, 참고인 진술 등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로, 사업비 2,400만 원 규모(보조금(80%) 1,920만 원, 자부담(20%) 480만 원)의 개보수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구입하지 않은 소방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집행하였다가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68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시설 개보수 공사비 1,920만 원을 부풀려 집행하고 건축사로부터 420만 원을 되돌려 받고, 위험방지 안전시설 설치금액 480만 원을 허위로 집행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소방물품 구입 금액 260만 원을 돌려받는 등 총 68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2. 21.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내역, 진술기록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 8. ~ 2017. 2.경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을 허위 등록하여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 약 535만 원과 기본보육료 약 771만 원 등 합계 1,306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을 허위 등록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약 535만 원과 기본보육료 약 771만 원 등 합계 1,306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는 인정되나 위법사실에 대해 이미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종결
 - ※ 통보일자 : 2017. 11. 22.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 착안사항 : 관련자 진술, 보조금 정산내역서, 출근부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2015. 11. ~ 2017. 4.경 피신고자2가 운영하는 주유소 등에서 피신고자1 회사 소유의 화물자동차 4대에 4개의 주유카드를 돌려가며 주유탱크 용량을 초과하거나 동일 차량에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실제 주유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괄 결제하거나 동일 주유소에서 동 시간 내 (1분~2시간)에 동일 화물차에 연속하여 주유하고 주유탱크 용량(150ℓ, 200ℓ)을 초과하여 주유하는 등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약 797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 종합검사 내역 등

공공기관 해외근로자 시간외·휴일수당 부당지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기술(주)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시간외·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파견된 관리·감독자 5명에게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US\$198,400을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해외에 파견된 주임급 이상 직급자 7명에게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1억 3,114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 국가재정법 등
- ▶ 착안사항 : 근무 일지, 수당 지급내역서 등

책임감리원의 인건비 부담 수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력시험설비 주설비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전기 책임감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약 2억 4천만 원을 부담 수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감리원 배치 및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특정 감리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해당 인건비 상당액을 감리용역 도급계약 내역서상 기술료 명목으로 대체하여 1억 1,113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서, 감리 결과보고서 등

영농보상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구'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영농에 종사한 자들과 공모하여 영농보상 토지를 불법 분할 받은 후 ○○도시공사에 영농보상을 신청하여 약 6억 5,000만 원의 영농보상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법정자료(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 경작사실 확인서, 이·통장 경작사실 확인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영농보상비 근거자료 및 내역서 등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 2는 공모하여 2017. 3.경 유치원 파트타임 교사 외 3명, 어린이집 파트타임 교사 외 1명을 정교사로 거짓 등록하고, 방과 후 수업 참여 원생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약 3억 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 2는 2017.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파트타임 교사 등 6명을 정교사로 거짓 등록한 후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등 총 1,461만 원을 편취하고, 화본구입비 등을 부풀려 171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 2014.부터 2017. 6.까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 원아들에게 지원되는 방과 후 과정비를 부풀려 2억 8,812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3억 444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교육청,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 29.
 - ○○교육청 조사결과, 해당 유치원 원장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의뢰
※ 통보일자 : 2017. 8. 3.
 - ○○광역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교육청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광역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유아교육법 제28조· 제34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 착안사항 : 근로계약서,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근무환경개선비, 장려수당

문화체험행사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진흥원으로부터 총사업비 6억 5,21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 내지 업체와의 허위 거래자료를 정산내역으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액미상의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5.경부터 총 3건의 정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허위 거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5,640만 원을 횡령하고, 같은 수법으로 사업자 자부담금을 집행하고 허위의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환수되어야 할 보조금 6,118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억 1,758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256조·제347조, 보조금법 제22조·제40조
-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사업비 집행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지역해바라기센터 인건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9.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2014.경 복무규정 상 무급인 보건의료를 자신의 전결로 결재한 후 근무상황부에는 정상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여 해당 월 급여를 지급받고, 시간외 수당 가산율도 법정 기준(1.5배)이 아닌 자신이 임의로 정해 보조금을 신청·지급하거나 남은 인건비를 처리하기 위해 센터 근로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시간외 근무 일지를 작성하게 한 후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규정상 무급인 보건의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정상근무한 것처럼 꾸며 2013. 1.부터 2014. 12.까지 총 22회에 걸쳐 195만 원을, 피신고자2는 같은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163만 원을, 피신고자3은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55만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414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1~3에 대해 부당 지급된 급여 414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7. 12. 8.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256조·제347조, 보조금법 제22조·제40조
- 착안사항 : 보건수당 사용신청서, 인건비 지급내역 등

지자체 소유 지장물건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0.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생활체육시설’이 ‘○○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어 ○○도시공사로부터 지장물건을 보상받게 되자, ○○시 소유 지장물건을 피신고자가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호회 소유인 것처럼 조작해 5,435만 원을 부당하게 보상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도시공사와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시 소유의 지장물건을 처분하고 보상금 5,435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지장물 계약 내역서, 보상금 내역서 등

지자체의 LED 태양광 보안등 부설시공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0.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광역시 ○○구와 ○○시가 발주한 LED 태양광 보안등 공사 등을 부설 시공해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한 의혹과 설계도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시방서에 규정된 제품 대신 규격 미달의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시공하는 수법으로 5,541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지방계약법 등
- 착안사항 : 공사 시방서, 공사 작업 내역서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0.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요양원 대표로, 수급자가 2017.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매일 오전 9시 경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가 오후 5~6시경에 퇴소하였음에도 외박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매일 숙박한 것처럼 수가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금액 미상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수급자가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매일 아침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가 식사 및 급여제공서비스를 받고 오후 5~6시 경 퇴소하여 수급자 외박 관련 급여기준에 따라 외박비용을 감액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숙박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100%를 청구하여 약 481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공단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43조
- 착안사항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진술기록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0. 3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2016~2018년경 정부지원금 7억 8,000만 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직 담당 내부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6. 7. 7.부터 2018. 12. 31.까지 ○○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를 지급했다가 회사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부지원금 1,933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신고자를 포함한 총 6명의 연구원 인건비 총 4,676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7. 12. 12.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수행계획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정산내역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0. 3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건설의 감사로 재임하며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2015. 7.경부터 2017. 10. 현재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매월 급여 약 140만 원을 자신이 대신 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경부터 2017. 10.경까지 자신의 딸을 같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매월 급여 약 140만 원을 자신이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1,319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외 (주)○○건설 대표가 피신고자와 공모하여 피신고자의 딸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사적으로 처분한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착안사항 : 근로현장, 근로소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0. 3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시 등으로부터 영업용 화물차 유류지급카드를 승인받아 사용하면서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유류 주유카드를 개인용달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100여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 등으로서,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시 등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면서 매월 사용하고 남은 유류를 개인용달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442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광역시,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광역시,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광역시,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서, 주유 카드영수증 등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7.경 미용실에 입사하여 매니저로 일하면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신의 계좌로는 매월 120만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조카 계좌로 나누어 받으며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7. 10.경부터 2015. 8.경까지 미용실에서 부원장으로 관리 업무를 해왔고, 2015. 11.부터 2017. 1.까지 미용실을 공동 운영한 사실, 2015. 8.경 미용실 퇴사 당시 월 고정수입 400만 원에 추가로 금액미상 인센티브 수입이 있었던 사실, 2015.경 당시 현금 4,000만 원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던 사실 등 소득 및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숨기는 방법으로 2009년도부터 2016년경까지 한부모가족 지원금 총 493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29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판결문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광역시 등으로부터 영업용 화물차(트레일러) 전용 유류지급카드를 승인받아 사용해 오면서 자신의 자가용 화물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영업용 화물차주로서,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광역시 등으로부터 3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면서 이를 자신 소유 자가용 화물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합계 886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광역시,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광역시, ○○광역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광역시, ○○광역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유류구매카드 전표 등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2. 1.경 ○○시로부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보조금 약 30억 원을 지원받아 ○○센터를 구축하였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에 10년간 45억 원에 임대하였다가 매각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주)○○에 영업팀장을 근무시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주)○○에 2016. 12.부터 2026. 11.까지 10년간 45억 원(매년 4억 5,000만 원)에 임대한 후 매각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보조사업자의 승인(묵인) 여부 확인 후 조치 예정 (환수금액 미정)
※ 통보일자 : 2018. 1. 22.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보조금법 제35조·제41조
- 착안사항 : 매매계약서, 사업계획서, 중요재산 공시 및 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예산 낭비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부풀려진 조달청 단가를 근거로 지오그리드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7개 사업에 소요되는 약 661백만 원 상당의 지오그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조사를 미 실시하고 부풀려진 조달청 계약단가로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액 약 661백만 원 대비 66%에 해당하는 약 439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 착안사항 : 자재 구매 내역서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5. 1.경부터 2017. 9.경까지 ○○부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수십여 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과제참여율을 과다계상하여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총 34개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과제참여율을 과다 계상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총 5,120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지급 정산내역서, 인건비 및 재료비 지급내역 등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수로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정부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에게는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십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자녀 학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2. 2. 15.부터 2017. 8.경까지 총 사업비 약 25억 원의 13개 연구과제를 수행 하면서 과제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들 152명에게 매달 인건비 150~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인건비의 약 20~30%(40~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약 3억 원 상당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착안사항 : 인건비 계좌내역서, 참여 연구원들의 진술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2010. 8.경 수입이 있는 현 남편과 결혼하였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0. 9.경부터 2017. 4.경까지 수천만 원의 기초생계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0. 8. 28. 매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현 남편과 결혼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0. 9. 20.부터 2017. 4. 20.까지 79회에 걸쳐 6,7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파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1. 29.
 - ○○광역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광역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착안사항 : 결혼 당시 사진, 계좌내역서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9.경부터 차량정비업체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면서 차명계좌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급여를 입금 받는 등 월 평균소득이 280만 원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8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금액 미상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9. 19.부터 2017. 10. 30.까지 차량정비업체에 근무하면서 월 180만 원에서 270만 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을 80만 원으로 신고하여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총 1,596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광역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광역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착안사항 : 근로소득 현황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2017. 1.부터 어린이집 원장으로, 피신고자2는 2017. 3.부터 같은 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거나 일 8시간 상시근무를 하지 않은 인원을 정식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농촌특별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를 허위 청구하고, 아동들을 원생으로 허위 등록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근무하지 않는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꾸미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2017. 3.부터 같은 해 9.까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거나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 보육교사 5명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6,126만 원,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 11명을 정상 등원한 것처럼 속여 보육료 1,898만 원 등 8,024만 원을, 피신고자2 역시 같은 수법으로 보육교사 6명, 아동 7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8,913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억 6,93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유아교육법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내역, 진술기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이 아닌 회사소유 자동차에 주유하고 외상장부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화물자동차에 주유 시 외상 금액과 합산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7. 4. 24. 주유소에서 4대에 총 19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 로 결제한 것이 확인되고, 동일 주유소에서 짧은 시간(1분) 동안 동일 화물자동차에 2회 주유한 기록이 다수 확인되며, 2013. 12.부터 2017. 5.까지 각 차량들(3.5t)의 주유탱크 용량(150ℓ)을 초과하여 151ℓ 내지 194ℓ를 주유한 기록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 종합검사 내역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주유소에 화물자동차들의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며 해당 화물자동차에 주유 시 화물자동차 차주 등의 자가용차량에 주유한 외상 금액을 합산하여 결제하거나, 요소수 등 소모품 구매 시에도 주유금액과 합산하여 결제하는 등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주유소에서 자가용차량에 주유한 금액과 화물자동차 소모품을 구매한 금액을 화물 자동차 주유금액과 합산하여 결제하고 동일한 주유소에서 동일시간대에 화물자동차에 2차례에 걸쳐 주유한 기록이 확인되고 각 차량들(11.5t, 14t)의 주유탱크 용량(300ℓ)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도, ○○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도, ○○도,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도, ○○도,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 종합검사 내역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 3. 10.부터 2017. 7. 10.까지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90만 원의 소득을 관할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총 389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7. 3.부터 2017. 6.까지 총 4개월 동안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29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숨기고 생계급여 341만 원, 주거급여 48만 원 등 총 389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착안사항 : 급여명세서, 근무계약서 등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양돈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보조금 24억 원이 지원되는 총사업비 3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부기관의 승인 없이 위 시설인 퇴비공장을 25년간 임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보조금 24억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시설의 일부분인 퇴비공장을 2010. 3. 25. (주)○○ 대표에게 25년간 유상 임대 조건으로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5조
- 착안사항 : 사업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분과 2017-363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2015. 2.경부터 2017. 5.경까지 파트타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다시 돌려받거나 원생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5. 2.경부터 2017. 5.경까지 파트타임 보육교사 5명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속여 담임교사로 등재하고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다시 돌려받거나 원생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약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 착안사항 : 계좌내역, 어린이집 행정처분 등

지자체의 타일 납품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규격미달의 그림 및 부조 타일(장식용)을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 관련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가 규격 미달의 타일을 납품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검수 및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약 32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시,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청, ○○시,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청, ○○시,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자재 구매 내역서, 제품 검수서 등

국립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경부터 2016. 12.경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학생들에게 인건비 통장을 만들도록 하여 이를 선임연구원이 관리하면서 매달 월급으로 지급된 연구원 인건비를 임의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5.경부터 2017. 5.경까지 7개 기관과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총 14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들이 교부받아야 할 연구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지급 정산내역서, 인건비지급내역, 통장사본 등 자료

지방이전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들은 수도권 공장 지방이전 투자를 명분으로 ○○군 등과 MOU를 체결하여 국유지를 헐값에 불하받고, 협약서에 따라 파신고자가 투자하기로 한 7,500억 원도 1,000억 원으로 감액하고, ○○군으로의 공장 이전도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군에서는 매각부지에 대한 가등기를 해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었고, 또한, 준공도 되지 않은 공장에 68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50억 원을 지원받는 등 특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1은 산업단지 투자개발조성 총 사업비 449억 3,300만 원 중 토지매입가액 25억 6,200만원을 제외한 설비투자금액 423억 7,100만 원에 보조금 50억 원을 ○○군에 신청하면서 사실은 설비 투자금액에 그 보조금액을 포함하여 신청함으로써 실제 교부받아야 할 보조금보다 5억 9,000만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파신고자2·3은 ○○(주)의 투자이행금액이 약 635억 원에 불과함에도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줄 목적으로 이를 부풀려 952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216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부,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와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227조·제229조·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지방이전 투자기업 보조내역, 진술기록 등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장의 개보수 및 외승로 조성 등을 추진한 후 불법으로 양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 5.경부터 2017. 6.경까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보조금 1억 7,44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장 시설의 개보수, 씨암말도입, 외승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말 산업 시설을 2017. 8. 29.에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5조·제41조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기부등본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연구소 대표로서, 2015. 5. 1.부터 2016. 2. 29.까지 ○○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시작품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로 발주하는 등 정정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로부터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연구과제를 추진 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3명의 연구원들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1,100만 원을 편취 하였고,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결과물인 시작품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발주하는 형태로 재료비 2,59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3,69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인건비 수령통장, 검수 사진 등

영농조합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9. 2.경 ○○군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09.경부터 2010.경까지 보조금 약 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시설을 개인 펜션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9. 2.경부터 약 5억 원을 지원받아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2017. 11. 현재까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을 임의적으로 개인 영리 목적의 펜션 용도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5조·제41조
- 착안사항 :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표, 펜션 운영 사진 등

사단법인의 공공기관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3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연구비 지급 후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3건의 연구용역사업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신고자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시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연구용역과제 지출내역, 예금 거래 내역서 등

지방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운영하는 카트경주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소속 기관 직원들을 일반 이용자로 위장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속 공사의 이익을 도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기관의 고객만족 업무담당자가 내부직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일반 고객으로 가장하여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내부업무망 게시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직원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휴대폰 문자 내역 및 내부 업무망 게시물 등

공공기관의 창호납품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단 본사 사옥 신축공사에 사용될 알루미늄 창호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약 15,000kg의 단열커튼월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음에도, 30,000kg 이상을 납품한 것으로 중량을 과다 계상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2억 원 이상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단열커튼월 15,221kg(약 2억 2,300만 원), 강철보강재, 전동장치 도합 2억 3,900만 원 상당을 납품하고 단열커튼월 30,004kg(약 4억 4,100만 원)을 납품한 것으로 허위 정산하여 2억 100만 원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청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자재 납품 내역서, 정산 내역서 등

수입대행업체의 공공기관 예산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13개 공공기관 및 15개 대학산학협력단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54건의 수입대행을 하면서 수입물품 대금 결제와 관련된 외국환거래계산서 위조, 항공운송료 등 수입대행 비용 부풀리기 수법으로 약 17억 원을 편취하고 각 수입대행 거래처 담당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은행에서 결제한 것보다 높은 환율로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위조한 외국환 거래계산서 및 통관수수료 등 수입대행 비용을 부풀려 화주에게 청구하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실과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5,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데 이용된 계좌가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부, ○○청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와 ○○부,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외국환거래계산서, 수입대행 비용 산출내역서 등

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친구들을 입주업체 대표들로 속여 연수에 참여시키거나 연수와 무관한 교수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연수비용을 보조금 등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07. 2.경부터 2010. 11.경까지 대학창업보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센터입주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중국, 터키 등으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지인들을 입주업체 대표자들로 속여 연수에 참가시키거나 연수와 무관한 교수들을 참가시켜 이들이 부담해야 할 개인 연수비용을 보조금과 창업보육센터예산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약 6,58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서, 해외연수관련 자료 등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수로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공공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을 일괄 지급한 후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무원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50~100만 원을 상납하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9. 5.경부터 2015. 2.경까지 총 사업비 약 8억 원의 1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들 10명에게 매달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사무원들을 통해 약 2억 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착안사항 : 인건비 계좌내역서, 참여 연구원들의 진술 등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2014. 6.경 ○○원으로부터 약 44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을 차명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2015. 6. 1.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100만 원을 사내 재무팀장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2016. 7. 28.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연구원 9명으로부터 연구수당 4,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연구개발재료비 정산내역, 계좌내역서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 5. 1.부터 2018. 12. 31.까지 ○○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 중이던 장비를 마치 신규 개발할 것처럼 속이고, 연구과제와 무관한 공사용 자재를 구입하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직원 등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년경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이미 개발되어 납품실적도 있는 제품을 마치 신규 개발할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1억 5,900만 원, 연구 과제와 무관한 공사용 자재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억 1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인건비 수령통장, 견적서, 검수 사진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이미 개발되어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신규 개발할 것처럼 속이고, 연구 과제와 무관한 타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2008. 6.경에 이미 개발되어 판매중인 제품을 신규 개발할 것처럼 속이고, 연구 과제와 무관한 타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 연구개발비 1억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인건비 수령통장, 견적서, 검수 사진 등

시설원에에너지 효율화 사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1.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비 3억 6,000만 원 규모의 보조사업자 및 시설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예농장에 이미 설치된 목재펠릿난방기를 신규 설치한 것처럼 견적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1.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비 3억 6,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0. 11. 중순 경 원예농장에 이미 설치된 목재펠릿난방기를 신규 설치한 것처럼 견적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내역, 진술기록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노인요양원 대표로, 2017. 6.부터 같은 해 8.까지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정상근무(주 5일, 일 8시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월 급여비용을 100%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7. 6.부터 같은 해 8.까지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정상근무(주 5일, 일 8시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인력결원비율(결원 수)에 따라 매월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로 정상 청구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788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공단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제43조
- 착안사항 : 근무기간, 진술기록

승마시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대표이사로, 2017. 1.경 ○○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승마시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식당 등을 설치하고 동 시설물을 불법 임대하여 보조금 사용목적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시로부터 보조금 3억 2,066만 원을 교부받아 승마시설을 운영하면서 2017. 1.경 관할 시청의 승인 없이 2017. 1. 1.부터 2019. 12. 31.(3년간)까지 보증금 9억 원에 불법 임대한 사실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5조·제41조
- 착안사항 : 양도양수계약서, 입금내역서 및 관련 규정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6.경부터 2017. 5.경까지 수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새로이 개발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평소 거래해오던 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정산하거나 연구원들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6.경부터 2017. 5.경까지 4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으로 속이기 위해 평소 거래해오던 10여개 업체로부터 연구개발 관련 시제품제작 재료 등을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이를 정산하고, 연구원의 연구수당과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13억 7,168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비 지급 정산내역서, 인건비, 재료비, 최종보고서 관련 자료 등

| 제1장 | 부패행위 신고사건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국민권익위원회

공단 직원의 보험료 징수 태만 의혹

2분과위원회(2016.1.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12. 5억 4,100만 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 중인 업체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1,800만 원만 교부 청구하여 배당 받음으로써 ○○공단에 5억 2,3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2순위 국세·지방세까지 배당 후 남은 잔액이 16억 2천만 원으로, 3순위인 위 4대 보험료 체납액을 교부 청구했다면 전액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배당금 교부 청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7. 3.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등 회계관계직원 3명에게 교부청구 누락 손실금액 523,010,690원 변상 명령
※ 통보일자 : 2017. 6. 22.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경고 처분
※ 통보일자 : 2017. 7. 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 착안사항 : 업무상 배임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지자체의 보강토 옹벽공사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의 뒷채움 작업시 설계대로 흙을 사용하지 않고 잡석을 섞어 부실 시공하여 수억 원을 편취하였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를 발견하고도 미조치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시 뒷채움재를 흙이 아닌 잡석을 사용함으로써 블록간 틈 및 균열, 옹벽의 '배부름 현상' 등 피신고자의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자재비 편취, 공모 및 직무유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 종결
※ 통보일자 : 2017. 7. 7.
 - ○○도 조사결과, 보강토 옹벽 일부구간의 균열 및 배부름 현상을 발견하여 보강공사 조치 및 향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담당부서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7. 7. 6.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6.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 수급인인 피신고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수역 원을 편취하고, 직불노무비 및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담당 공직자들은 피신고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약 2억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5명 구속 기소의견, 32명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6. 26.
 - 부,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착안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취(사기)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관급 아스콘 납품대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자체가 발주한 아스콘을 실제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이 공사현장에 납품된 것처럼 출하일지 및 송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납품대금을 편취하였고, 도로건설공사의 아스콘 두께가 설계 기준에 미달되어 부실 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표본 추출한 4건의 공사현장에서 아스콘 생산·출하일지상 생산량과 납품량의 차이(121톤)가 있었고, 일부 현장에서 샘플 조사한 아스콘 두께가 설계 기준 130mm의 허용 오차범위(-5% 내지 +10% 이내)에 미달되는 110mm인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1의 전직 생산부장이자 피신고자2의 영업담당자인 서○○을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7. 3.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용역업체의 공공기관 용역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림판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조작한 허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정산하는 수법으로 금액 미상의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 현장포럼' 용역사업비 정산 영수증 중 교육생 간식비, 식대 명목의 영수증을 다수 (22장 중 7장) 조작해 공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매출전표 및 은행이체거래 확인증 위조사항에 대해서 기소의견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7. 10. 1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지자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수급인이 전석 및 조경석 시공시 면적을 과소 시공하고, 우수 유출입 배수로(4개소)를 부실시공 하였으며, 공무원들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1억 2,200만 원을 지급받게 하여 공공기관에 예산상 손실을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전석 쌓기는 설계치수보다 낮게 시공되어 254.3㎡ 면적이 축소되었고, 조경석 쌓기는 도로변 조경석 26.7㎡, 주차장 조경석 12.4㎡ 면적이 각각 축소 시공되었으며, 우수 유출입 배수로는 총 9개소 중 4개소가 '기울기'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1에 대해 자재비 2,601만 2천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0. 10.
 - ○○도 조사결과, 공사비 2,601만 2천 원 환수, 담당공무원 경징계 3명, 피신고자2, 3 훈계 처분
※ 통보일자 : 2017. 6. 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 운영지도수당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고등학교 교장인 피신고자1이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기초 영문법을 수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맞춤형 수업 운영지도수당 450만 원을 편취하고, 학교 교장인 피신고자2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관할 교육청이 피신고자1이 실제 수업하지 않고 관리수당 명목으로 45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교육청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경미하게 환수 조치 및 경고·주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1, 2와 다른 교사 16명을 업무상 배임(방조)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6. 20.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1, 2는 동일한 민원사안 조사결과로 이미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아 내부 종결, 기타 교사 16명에 대하여 경고 처분
※ 통보일자 : 2017. 11. 1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강교(鋼橋) 도장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공기관이 발주한 강교 도장공사의 수급인인 피신고자들은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도장공사 시 기존 페인트와 이물질들 일부만 제거하고 작업하여 사업비를 편취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은 무자격자에게 강교 도장검사를 맡겨 공사관리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수급인인 피신고자1, 2가 작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는 다수의 건설사들에 인건비를 지급하여 불법 하도급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혹 등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1, 2와 그 법인, 신고 외 하수급인 2명과 그 법인, 피신고자 3 등 9명 (법인 4 포함)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3. 22.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자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자체 농로 포장공사에 저가의 콘크리트 섬유 보강재를 납품하거나, 용량을 미달하여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농로 포장공사에 시방서상 토목용 ○○셀 대신 저가 제품인 건축용 ○○콘셀을 납품하거나 용량을 미달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고의로 저가의 제품을 속여 납품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내사 종결
※ 통보일자 : 2017. 7. 11.
 - ○○도 조사결과, 관련 공무원(20명)에 대해 감독·검사의무 이행 및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주의 및 훈계 처분 요구
※ 통보일자 : 2016. 12. 16.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등
-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직유관단체가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한 실적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직유관단체가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형태별 가산액이란 명목으로 실제 근무한 실적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여 약 8억 1천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피신고기관에게 2013년~2015년 총인건비 초과 집행액 4억 7,100만 원을 2018년도 인건비 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통보하고, 피신고기관 기술원 2명에게 '주의' 촉구
※ 통보일자 : 2017. 8. 24.
- 위원회 검토의견
 - 감사원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 등
- 착안사항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집행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관급자재 납품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기업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중앙 난방보일러 교체 시 담당 공직자는 경쟁입찰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일러업체와 공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으로 등재된 같은 업체의 '증기보일러'를 구매 요청한 후 같은 업체의 다른 사양의 '중온수보일러'로 납품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증기보일러'와는 달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지 못한 '중온수보일러'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증기보일러'를 구매 요청한 후 보일러업체로부터 규격서와 다른 사양의 '중온수보일러'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제품을 납품하여 우수제품 계약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하였기에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
※ 통보일자 : 2017. 1. 4.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등
- 착안사항 : 규격서와 다른 물품 납품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1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 2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국민권익위원회

| 제2장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0억 6,6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의 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건설업체가 고속도로터널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달리 시공하거나, 일부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파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비 10억 6,600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32,605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중파(AM)송신소 공사대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중파(AM)송신소 공사대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5,214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건설업체가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내 송신소를 이설하면서 방송사와 공모하여 이설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비 3억 5,214만 6,810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5,30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3,901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콘크리트 대표 소속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이 주유소에서 주유 시 유류구매카드로 바로 결제하지 않고 주유소에서 발행하는 전표에 서명하고, ○○콘크리트 대표가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일괄 결제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2억 3,901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9,46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마을이장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마을이장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8,259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이 ○○군으로부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로포장공사를 수행하면서 자재대금 및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8,259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2016년 20차 전원위원회가 신고자에게 보상금 600여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를 공제함.

3. 결정결과

- 금 10,51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비영리민간단체(○○○○연합회)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비영리민간단체(○○○○연합회) 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1,9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연합회가 구입 단가와 수량을 부풀린 허위매출전표 등을 이용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1억 1,900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환수 결정된 1억 1,900여만 원 중 일부(5,700여만 원)만 환수되었으나, 환수금액이 산정된 보상금 이상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22,66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사회복지단체의 국가 보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6.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가 보조금 편취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5,6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보조금(생계비)을 지급받은 후, 타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1억 5,600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7,94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6.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6,1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타일 판매업자가 실제 공급하기로 계약된 타일 대신, 유사한 타일로 바꾸어 납품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비 2억 6,100여만 원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이 있었으며, 위 지급명령 확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지급명령이 확정된 2억 6,100여만 원 중 일부(120여만 원)만 환수된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21,305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민간업체의 정부용역과제 연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6.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민간업체의 정부용역과제 연구비용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6억 6,501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정부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한 업체가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을 주관기관에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6억 6,501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83,25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자원개발 관련 국가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6.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자원개발 관련 국가지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30억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공사가 자원개발 관련 규정 등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업체로부터 국가지원금을 과소 회수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과소 회수된 130억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3,61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고속국도 확장 부실공사에 따른 예산 부담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6.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고속국도 확장 부실공사에 따른 예산 부담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4억 3,934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던 ○○건설이 락볼트, 격자지보 등을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처인 ○○공사에 설계대로 시공한 것처럼 기성금을 청구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비 34억 3,934여만 원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위 설계변경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18,652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도시철도 공사 관련 자재 및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6.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도시철도 공사 관련 자재 및 공사비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8억 6,32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던 ○○업체가 설계도서에 기재된 무진동 파쇄 공법 대신 다단발파 공법으로 시공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비 8억 6,320여만 원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위 설계변경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60,84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8.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영농조합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9,83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하고도 새 물품을 설치하였다고 허위 장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3억 9,830여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이 있었으며, 위 환수처분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1,763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영농조합관계자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8.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영농조합관계자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6억 41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영농조합 대표가 ○○시로부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해외 진출 상담회에 안내부스를 설치하지 않고도 안내부스를 설치하였다고 서류를 제출하여 ○○무역협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수령한 보조금 6억 410여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이 있었으며, 위 환수처분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환수 결정된 6억 410여만 원 중 410여만 원만 환수된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34,56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8.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3,8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한 재료비 등을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지원금 2억 3,800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환수 결정된 2억 3,800여만 원 중 40여만 원만 환수된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15,783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지방창업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8.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지방창업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지방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조건에 따라 2년간 해당설비를 유지,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편취한 보조금 3억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3,05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어린이집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8.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282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어린이집 보조금 등 5,282여 만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0,565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8.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96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2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A복지시설에 상담지도원으로 채용된 직원을 B복지시설 사무원으로 전담 근무하도록 하는 등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4,96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4,88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복선전철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복선전철 공사비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2억 3,176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복선전철 공사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이 발파공법으로 공사하고도 설계대로 무진동공법으로 공사한 것처럼 원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공사비 약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원도급업체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책임 감리원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비 12억 3,176여만 원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위 설계변경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49,17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7억 6,561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기술혁신 개발사업 출연금을 지원받은 후 기술혁신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자사 제품 생산에 정부 출연금을 사용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편취한 정부 출연금 7억 6,561여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이 있었으며, 위 정부 출연금 환수처분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71,792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광고물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광고물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4,233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 ○○구 간판 제작·설치업체의 대표들이 상인들로부터 신규간판설치비 개인부담금을 10~30% 덜 받는 대신 ○○구로부터 옥외광고업무 선진화 추진 지원금을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지원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있었으며, 위 환수처분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5,92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96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거나,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의 실적을 부풀려 강사료를 지급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사업비의 환수처분이 있었으며, 위 환수처분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4,902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공공기관 직원 금품수수 및 납품비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공공기관 직원 금품수수 및 납품비리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2,273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공사 직원과 ○○○○공사에 A제품을 납품하는 ○○엔지니어링 대표가 서로 공모하여 A제품을 입고시켰다가 설치하지 않고 반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비 4억 2,273여만 원의 환수처분이 있었으며, 위 환수처분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5,627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2,86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아동을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육 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어린이집 보조금 2억 2,867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0,41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지하수 자원관리사업 사업비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지하수 자원관리사업 사업비 횡령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619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공사 직원이 지하수 자원관리사업 현장조사요원의 인건비를 허위 신청한 후 횡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수령한 인건비 1억 619여만 원의 환수처분이 있었으며, 위 환수 처분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0,86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5,172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열처리로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가 열처리로를 구매했던 업체대표들과 공모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원금의 상환명령 및 이자 2억 5,172여만 원의 환수처분이 있었으며, 위 환수처분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1,24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7,150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은 ○○업체 대표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부품을 구입하고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정부 출연금의 환수처분이 있었으며, 위 환수처분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4,30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6,6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허위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 과제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국가 보조금 3억 6,600여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이 있었으며, 위 환수처분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0,123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국가과제사업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국가과제사업비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동일한 과제에 대해 과제명만 달리하여 ○○○○청과 ○○○○공단으로부터 각각 사업비를 지원받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 수급한 사업비 1억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0,43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9,454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화물차 운전기사들과 주유소 대표가 서로 공모하여 실제 주유액 보다 부풀려 허위 계산을 하거나 실제 주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유가보조금 1억 9,454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9,913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노인요양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노인요양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773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요양원 대표가 요양원 종사자와 입소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원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3,773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1,31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영화제작지원 자치단체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영화제작지원 자치단체보조금 횡령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8,032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예술학교 영화촌 총장과 영화감독이 ○○시로부터 영화제작 지원 보조금을 받아 하위로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 수령한 보조금 8,032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 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6,00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 제2장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불법전대에 의한 예산낭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국유지 불법전대에 의한 예산낭비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김○○이 ○○○○공단 소유 토지를 낙찰 받은 후 다시 황○○에게 가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도록 계약하고 임대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공단 담당자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에게 징계처분(불문경고)이 있었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유소 대표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10명이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주유소 대표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실태를 밝혀내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단, 2017년 14차 전원위원회가 신고자에게 보상금 16여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를 공제함.

3. 결정결과

- 금 9,839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공공기관 주차관리구역 입찰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공공기관 주차관리구역 입찰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공공기관인 ○○○○의 주차장 관리구역과 관련하여 ○○○○의 직원들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에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3명이 징계처분(견책)을 받았고, 공공기관 입찰 부정행위를 발각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우체국 위탁운송업체의 운송비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우체국 위탁운송업체의 운송비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우체국 위탁운송업체인 ○○화물 대표가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운송하면서 차량 용적을 5톤 차량으로 허위 기재하여 우편물 운송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지원단 ○○사업소 사무장과 소장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중 1명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3명에게 징계 처분(정직 1월 2명, 견책처분 1명)이 있었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0,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가 ○○군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었고, ○○군 담당자는 이에 협조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중 2명에게 징역형 선고, 1명에게 징계처분(파면)이 있었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약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지방이전기업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지방이전기업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시에 공장면적 과다산정, 기업신용평가서 조작, 근무인원 과다 산정 등 관련 서류를 허위제출 하는 방법으로 지방이전 정부지원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15명이 기소되어 징역형 및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허위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 지방이전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급 받는 실태를 밝혀내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척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정보화사업 외주업체로부터 편익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정보화사업 외주업체로부터 편익수수 의혹」건을 공공기관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공공기관인 ○○○○공단의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정보화사업 외주업체로부터 숙소 및 차량 등 편익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을 ○○○○공단 감사실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금품등의 수수금지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1,855여만 원의 편익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파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금품등의 수수금지 위반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3장

공익신고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 약국의 개설 약사는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CCTV 동영상, 피신고자 등이 작성·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와 진술서를 종합하면, 피신고자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630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7. 4. 19.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7. 4. 19.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23조·제76조·제79조·제93조
- 착안사항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 여부 및 약사의 지시 여부

어린이집 부실 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영유아 42명을 보육하면서 조리원을 두지 않고,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현장 확인결과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 교직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보육교직원의 복무관리와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시정명령
※ 통보일자 : 2017. 2. 20.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4조·제33조·제44조
- 착안사항 : 보육교직원 근무상황부 및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시스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2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 병원에서 환자 검사결과 보고서 등이 인쇄된 이면지를 재활용하여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병원 팩스기에 들어있는 이면지(89장)에 검사결과 보고서, 진단보고서, 진단서 등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파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검토
※ 통보일자 : 2018. 1. 23.
 - 경찰청 수사 중
 - ○○시 ○○구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구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19조·제66조·제8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제73조
- 착안사항 : 환자 개인정보 유출 여부

공동주택 행위허가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1층과 2층에 각각 화장실이 있었으나,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여 1층의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 포함시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증거사진 및 현장조사에 따른 확인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1층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 면적을 1층 상가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용함으로써 당초 근린생활시설의 사업계획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피신고자는 근린생활시설 1층 화장실을 당초 사업계획대로 원상복구 함
 - ※ 통보일자 : 2017. 4. 19.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94조·제99조
- 착안사항 :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당초 사업계획 승인대로 사용 여부

도장업체의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의혹

2분과위원회(2017. 3.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고, 위험물 저장·취급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관할 관청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알루미늄 사시 도장업체로서 지정수량(1,000ℓ)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였고, 위험물 저장·취급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로서 전기계약사용량이 500kW이면서 관할 관청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지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지청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560만원 부과
※ 통보일자 : 2017. 4. 12.
 - ○○시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조치명령
※ 통보일자 : 2017. 4. 13.
 - 대검찰청 수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벌금 100만원
※ 통보일자 : 2017. 4. 30.
- 위원회 검토의견
 - ○○지청, ○○시 조사결과와 대검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위험물관리법 제5조·제6조·제35조, 산업안전관리법 제48조·제72조
- 착안사항 :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행위 여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군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군 조사결과, 피신고자 고발 조치
※ 통보일자 : 2017. 4. 20.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군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44조
- 착안사항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여부

무허가 건축 의혹

1분과위원회(2017. 3.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물을 건축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행정기관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축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7. 5. 16.
 - ○○시 ○○구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구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건축법 제11조·제79조·제108조
- 착안사항 : 무허가 건축 여부

건축물 불법 증축 의혹

2분과위원회(2017. 4.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구 소재 연면적 304.69㎡의 3층 건물 소유주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주차 공간을 상가로 무단 증축하여 임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건축물 현황도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이 건물 1층의 주차장을 상가로 구조변경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축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위법 건축행위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토록 시정명령
※ 통보일자 : 2017. 5. 4.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건축법 제11조·제79조·제80조·제108조
- 착안사항 : 건물의 무단 증축 및 대수선 여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17. 4.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시설도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시 △△구에 소재한 특장차 제조업체로서 특장차를 제조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시설도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1킬로와트(15마력)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약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사용중지명령
※ 통보일자 : 2017. 5.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8·제90조
- 착안사항 :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7. 5.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구 소재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상습적으로 주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거사진과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 소유의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지 아니한 차량임에도 ○○시 ○○구 소재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 통보일자 : 2017. 12. 12.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7조
- 착안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여부

식품 과대광고 의혹

2분과위원회(2017. 5.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 업체는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과대 광고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거사진과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파신고 업체는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파신고 업체에게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처분
※ 통보일자 : 2017. 6. 28.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제75조
- 착안사항 :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의혹

2분과위원회(2017. 5. 2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가 발주한 '△△ 3단계 ○○시스템 구축사업'의 수급자로서 일정 기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계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거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이 사건 구축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2,842,000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7,886,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안전관리자를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해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미리 선임하였어야 하나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부족계상분 4,956,000원을 계상하도록 시정명령, 피신고자 500만 원, 발주자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 통보일자 : 2017. 7. 4.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7조·제72조
- 착안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무허가 건축 의혹

2분과위원회(2017. 6. 1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 용도의 건축물을 1층과 2층에 무단 건축(약 60㎡)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현장 확인결과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파신고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축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파신고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 통보일자 : 2017. 6. 8. (공동조사 후 바로 결과 통보)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건축법 제14조·제79조·제80조
- 착안사항 : 건축물 무단 증·개축 여부

도로구역 불법 건축 및 쓰레기 소각 의혹

2분과위원회(2017. 6.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 음식점 건물과 연접한 도로부지 위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지하 땅굴을 만들어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증거사진 및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관할 군수의 허가 없이 도로부지 위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축법」, 「도로법」,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군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군 조사결과
 - 도시건축과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 건설교통과 : 도로 부지 원상회복 명령,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 환 경 과 : 과태료 50만 원 부과
 - ※ 통보일자 : 2017. 12. 7.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군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건축법 제11조·제79조·제80조·제108조, 도로법 제27조·제61조·제114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 착안사항 : 건축물 무단 건축 여부, 도로부지 무단 사용 여부, 폐기물 무단 소각 여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7. 6.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허가받은 보관 장소가 아닌 △△시 소유 토지에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약 1만 8천여톤을 농지 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야적 보관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는 석분 약 8천여톤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방진덮개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야적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환경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200만 원, 과징금 2,000만 원 부과,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 통보일자 : 2017. 7. 26.
 - ○○환경청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지검에 사건 송치
※ 통보일자 : 2017. 10. 11.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7. 9. 4.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환경청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5조·제66조, 농지법 제34조·제42조·제5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92조
- 착안사항 :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2분과위원회(2017. 6.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CCTV 동영상, 신고자의 진술과 피신고자 등이 작성·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종합하면, 피신고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조사결과, 피신고 약국에게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70만 원 부과, 수사 기관 고발조치
 - ※ 통보일자 : 2017. 12. 13.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23조·제76조·제79조·제93조
- 착안사항 :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여부 및 약사의 지시 여부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 및 위험물 보관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7. 7.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관하다가 환경부와 소방서의 점검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화물차 15대 정도에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을 실어 놓고 점검을 피해 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거사진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허가 받은 장소 및 △△소방서로부터 위험물 저장소로 허가 받은 장소 이외의 곳에서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화학물질 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유역환경청, ○○소방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소방서 조사결과, 무허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을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피신고자 송치, 위험물 제거 조치명령
※ 통보일자 : 2017. 8. 25.
 - ○○유역환경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소방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유역환경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5조·제5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4조의3
- 착안사항 : 허가 받은 장소 이외의 곳에서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보관 여부

산지 및 농지 불법전용 의혹

2분과위원회(2017. 7.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및 농지를 전용하거나 허가 없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들은 △△군 △△면 △△리 소재 임야 7필지 3,739㎡, 농지 11필지 18,885㎡에 대해 각각 관할 관청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무단으로 전용한 토지 중 일부는 국유지, 공원구역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공단, ○○군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공단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원상복구 요청
※ 통보일자 : 2017. 9. 6.
 - ○○군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부분 복구명령 조치 예정
※ 통보일자 : 2017. 10. 16.
 - 경찰청 수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7. 9. 15.
- 위원회 검토의견
 - ○○공단, ○○군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산지관리법 제14조·제44·제53조, 농지법 제34조·제42조·제57조, 자연공원법 제23조·제24조·제82조
- 착안사항 : 산지 및 농지 불법 전용행위 여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17. 7.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시설도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시 △△동 소재 농지에서 컨테이너 보관 및 제조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시설도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7.5킬로와트(10마력)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도장시설 사용중지명령
※ 통보일자 : 2017. 8. 16.
 - 대검찰청 수사결과, 법 위반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 150만 원
※ 통보일자 : 2017. 9. 21.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와 대검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8조·제90조
- 착안사항 :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성인용기저귀 안전확인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7. 8.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일본에서 제조되어 중국으로 보내진 품질기준 미달(B·C급)의 폐기대상인 '△△△' 브랜드의 성인용기저귀를 중국 공장에서 피신고자의 상표가 붙은 포장만 하여 한국으로 들여와 피신고자가 당초 받았던 중국제조 제품의 안전확인 표시를 하여 유통·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참고인 진술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성인용 기저귀에 안전확인 표시를 하여 유통·판매 하였으며, 이 사건 기저귀는 일본에서 생산되어 중국에서 포장만 된 것으로 원산지는 일본임에도 중국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위원회,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기저귀 판매중지 및 파기 명령
※ 통보일자 : 2017. 10. 24.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와 ○○위원회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32조·제40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53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9조·제17조
- 착안사항 :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신고 미이행 의혹

2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일반 고철의 분리·선별 및 압착·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흙고철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고철 작업장 마당에 100.36톤, 주차장 부지에 25.3톤 등 125.66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있으며, 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고자는 약 3,500㎡의 규모에 500마력(370kW)의 절단시설을 이용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면서 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조치
※ 통보일자 : 2017. 10. 16.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7. 11. 22.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와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46조·제48조·제63조·제66조
- 착안사항 :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표시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7. 9.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이 아파트 한 개동의 지하주차장이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지 않게 건축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입주자 모집공고 책자,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달리 이 아파트 한 개 동의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이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고 1층에서만 연결되게 건축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위원회,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위원회,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위원회,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7조·제9조·제17조
- 착안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여부

저수지 개보수공사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7. 9.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저수지의 수로 밑 콘크리트 틈새와 여수로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거사진,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저수지의 여수로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는 사실, 여수로 옆 벽면의 콘크리트 이음새에서 물이 새고 있는 사실, 저수지와 여수로를 나누고 있는 콘크리트 벽에서 물이 새고 있는 사실, 저수지의 수문과 수문의 이음새에서 물이 새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명하여 '17. 10. 21. 하자보수 완료
 - ※ 통보일자 : 2017. 10. 27.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54조
- 착안사항 : 저수지 개보수 공사의 부실시공 여부

폐열보일러 개조검사 미이행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0.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가 사용 중인 폐열보일러는 최초 제조검사를 받은 후 구조가 변경되었음에도 한국에너지공단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6년 제조검사를 받은 강철수관 폐열보일러 4기를 5개월 동안 파신고자의 공장에 설치 및 시운전하면서 각 보일러의 수관 30개, 총 120개를 임의로 제거하는 구조 변경을 하였음에도 검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개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파신고자 고발 조치
※ 통보일자 : 2017. 9. 21.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73조
- 착안사항 : 폐열보일러 개조검사 미이행 여부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 불법 하도급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1. 1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을 수행할 능력과 인력이 없음에도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하여 안전진단 용역 등을 낙찰 받아 이를 불법 하도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거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도 ○○시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에도 발주관서의 승인도 받지 않고 (주)△△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7조·제8조의3·제9조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착안사항 :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 용역 불법 하도급 여부

무허가 축사 건축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1.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파신고자가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 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퇴비를 인근 토지에 방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파신고자는 2014년 축사 건축물 1동(경량철골조 554.6㎡)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여 한우 13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소 사육시설(224㎡)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 사육과정에서 발생된 퇴비 약 15톤 정도를 인근 토지에 방치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파신고자에게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 통보일자 : 2017. 11. 30.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건축법 제11조·제7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0조
- 착안사항 : 무허가 축사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 여부

개인정보 파기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1.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합격자 및 채용포기 서류는 3년, 미합격자 서류는 1년, 퇴직직원은 영구로 기재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는 등 법정 파기기간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현장 확인결과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직원 채용을 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위반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1조·제75조
- 착안사항 : 채용서류 파기·반환 여부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1. 2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썹문신 시술을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시술비용 입금내역서, 시술 전후의 사진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의사면허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의료행위를 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8. 1. 1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제87조·제97조
- 착안사항 :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여부 및 시술 대상자의 진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및 목적 외 사용 의혹

2분과위원회(2017. 12.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이 발주하고 피신고자2가 시공하고 있는 △△시 소재 ∇∇사이언스 건축공사 중 통신공사 부분에서 피신고자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에게 통신공사를 도급하면서 4개의 통신공사 공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계상 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방한복을 구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72조
- 착안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계상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 1 공익신고자 보호
-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국민권익위원회

| 제4장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아동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전원위원회(2017. 3. 13.)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16.7.경 방과 후 학교 오케스트라 강사의 아동학대 의혹을 공익신고 하였고, 이후 피해학생 학부모가 신청인의 외부 신고 등으로 오케스트라 수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등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신청기관에 민원을 제기함.
- 이에 피신청기관은 '16.8.경 특정감사를 하여 신청인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아동학대 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피신청기관의 '주의 및 경고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 신청인의 공익신고가 있는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민원내용, 특정감사의 지적사항 및 처분 사유가 아동학대 신고와 경찰서에 제출된 관련 자료 유출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의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반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 피신청기관은 불복 소송을 하였으나 1심 패소 후 보호결정 사항을 수용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20조·제23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전원위원회(2017. 3. 13.)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16.10.경 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부와 위원회에 공익신고 하였고, 피신청인은 '16.11.경 신청인을 해고함.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공익신고 이전에 언론에 이를 제보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공익신고가 있는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는 신고자 보호를 통한 공익침해방지에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신고자의 언론제보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신고 전후의 언론제보를 이유로 신고자를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신청인의 언론제보는 침해법익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감안할 때 공익적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공익신고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보호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기업의 영업비밀 유지 이익이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중대한 공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언론 접근권을 봉쇄해서는 안 됨.
- 따라서, 공익신고 전후의 언론제보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됨.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해고 취소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 전후 언론제보를 이유로 신고자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의료법 위반」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전원위원회(2017. 8. 7.)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요구인이 ○○병원의 환자 부담금 할인 등 부당환자유치 행위를 ○○부에 신고하자, ○○부는 이를 관할 보건소에 이첩함.
 - 피신고자인 ○○병원 원장이 요구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자, 요구인은 보건소 등 조사기관의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요구인의 신분이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구함.
- ※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고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법원 직원이 피신고자에게 ○○부의 이첩공문과 신고서 등 사본을 열람·복사해 준 것으로 확인 됨.

2. 심의내용

- 피요구인이 피신고자에게 재판기록 사본을 제공하면서 다른 곳은 대부분 비실명처리를 했으나, 실수로 한 곳에 비실명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요구인에게 요구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피요구인이 변호인에게 비실명처리 없이 원본을 제공한 것은 피신고자에 대한 재판기록 사본 제공 후 2개월 이상 지난 후였고, 관행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지 않은 채 제공하여 그 내용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피요구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신고자 인적사항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신분상 위협, 인사·신분상 불이익조치 가능성이 높은바, 신고자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결정결과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대법원, 대검찰청 등에 재판기록등 열람·복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 촉구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확인사항** : 공익신고자 신분비밀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의 필요성 유무

「불법공산품 제조·수입·판매」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전원위원회(2017. 9. 25.)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불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한 회사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하였는데, 피요구인이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서에 요구인의 성명을 제목에 포함시켜 화신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국민 정보공개 포털에 성명이 공개됨.
- 요구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국민신문고 화신문에 요구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제목과 성명만 보더라도 신고자가 요구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요구인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임을 표시하여 신고한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민원 화신문에 요구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화신한 것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함.
- 피요구인이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요구인의 징계권자에게 피요구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피요구인이 비밀보장의무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피요구인에 대한 주의 요구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착안사항** : 피요구인이 비밀보장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입찰담합」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전원위원회(2017. 12. 26.)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고강도콘크리트 파일 및 하수관로인 휴관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검찰에 공익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2년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2년) 조치를 받아 이러한 처분의 면제를 요구하며 책임감면을 신청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담합행위 신고는 공익신고등과의 관련성이 있고, 담합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불리한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신청인은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2년간 낙찰이나 수주가 불가능하여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부도 및 파산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이는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책임감면의 필요성이 상당함.

3. 결정결과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착안사항** :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책임감면의 필요성 여부

| 제4장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2,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4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8,1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및 벌금 총 18,1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62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3,6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위탁급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위탁급식업체가 보존식*을 미보관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보존식 : 특정장소에서 제공한 특정 음식물을 섭취한 식중독 환자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역학조사를 명확화 하기 위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64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3,64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728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728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확인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축산물 가공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주택에서 불법으로 도살을 하고 도살된 고기를 시장에 납품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8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1,8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6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36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게임기 설치·운영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관할 지방교육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7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법원의 벌금부과에 대하여 피신고자는 벌금 700천 원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이행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4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4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3개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9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3,9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78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7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무자격자 건축물 시공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건설업 등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여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 벌금 총 6,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2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항공기 운항기술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항공기 운항 중 소음발생 등 기체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항공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5,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0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4,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800천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8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확인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로 유독가스가 외부 유출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6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1,6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20천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3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소홀」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1,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1,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산림 무단 벌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소나무 등이 무단으로 벌채되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5,665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및 추징금 총 35,665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7,133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7,133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가짜 석유제품 보관·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개 파신고업체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였다고 ○○관리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 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파신고업체들에 벌금 총 6,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이 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관리원으로부터 포상금 총 100천 원을 수령하여 공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1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1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중개대상물 임대광고를 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1,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9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9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8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확인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건설업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 벌금 총 10,000천원이 부과되어 총 5,000천원이 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000천 원임.
※ 부과된 벌금 중 일부만 납부 완료되었으나, 수입 증대 금액이 산정된 보상금보다 크므로 산정된 보상금 전액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2,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척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무허가 가족 도살」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관할 기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채 가족을 도살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양곡 정보 거짓 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양곡가업업자가 쌀 생산년도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할인마트에서 판매하였다고 ○○관리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5,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이 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관리원으로부터 포상금 총 500천 원을 수령하여 공제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5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5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2,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총 12,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400천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2,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고압가스 제조자 안전관리자 선임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접 선임을 위반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6,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2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들이 건설폐기물을 허가된 보관 장소가 아닌 사업장 부지에 운반·보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9,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들에 과태료 총 9,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8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8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확인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하천 무단점용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하천 내 파라솔 설치 등 하천 무단점용,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 행위를 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하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5,000천원 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0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부동산 거래계약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장기간 부동산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034,45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공익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들에 과태료 및 가산금 총 1,034,45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76,004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76,004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위원회(이하 '피신고운영위원회')가 감리용역 계약의 감리비 수준을 결정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4,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운영위원회에 과징금 총 74,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사유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 1,110천 원을 수령하여 공제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3,69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3,69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부당 고객유인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매업소들에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48,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648,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사유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 14,720천 원을 수령하여 공제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76,08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76,0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확인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영농조합법인인 피신고업체가 고춧가루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7,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4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위조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의 위조 의약품 판매 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2,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법원의 벌금부과에 대하여 피신고자는 벌금 2,000천 원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이행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4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의료기관 유사명칭 사용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3,699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및 벌금 총 13,699천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739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2,739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의료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인 3개 병원의 불법 광고행위를 관할 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5,375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및 벌금 총 65,375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3,075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3,075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환자 유인을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3,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6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6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판매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 제품을 진열·판매 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9,36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9,36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872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872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서 보존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42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7,42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484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484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일반음식점인 파신고업체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6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파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3,6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720천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7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확인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산업재해 미보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들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2,96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12,96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592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2,592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기계에 해당하는 천장크레인 및 압력용기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1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및 과태료 총 4,1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82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8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액화석유가스 판매 안전유지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액화석유가스용기를 용기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4,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9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9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전기공사 표지 미 게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채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4,000천 원이 부과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어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피신고업체가 체납하고 있어 수입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보상금의 50% 우선 지급 후 추후 수입 증대 금액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8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소하천 무단점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 및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595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소하천정비법」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변상금 총 4,595천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변상금은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오는 처분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해당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919천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919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미등록 직업소개소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차량을 이용하여 접대부를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주점에서 연락이 오면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3,000천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6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6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중요정보 표시·광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았다고 관할 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2,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400천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부당 고객유인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소매업소들에게 불법 판매장려금 지급 등 고객유인행위를 하였다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216,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1,216,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사유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 23,240천 원을 수령하여 공제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24,360천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24,36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식품접객업자의 불법 티켓 영업 알선행위」건 관련 보상금 기각

전원위원회(2017. 4.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주가 종업원에게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 티켓 영업 행위를 알선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이 피신고자들의 불법행위를 유도하였으며, 신청인의 적극적인 요구 및 대가 지불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된 것임에도 신청인의 공익신고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제3항 및 별표2는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공익침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은 신고를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시간적 소요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시간비를 지급한 후 이를 촬영하여 신고한 바, 신청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해당 신고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6.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파신고업체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대상 계란과 분변 등에 오염된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하여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계란을 공급받은 업체들은 이를 원료로 한 롤케이크 등을 만들어 웨딩업체 및 학교 등에 납품하고 있다고 관할 식약청 및 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88,47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파신고업체 등에 벌금 및 과징금 총 188,47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7,694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37,694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척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보건관리자 업무 지정한계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6.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의료법인이 지정받은 것을 초과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8,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18,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6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3,6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영업비밀 누설·취득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6.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 등 2명은 피신고업체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타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공동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2,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22,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공동 신고인의 공익침해행위 가담에 따른 감액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825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3,825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감액사유 적용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폐기물 불법 매립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8.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폐사한 돼지 사체를 농장 내 토지에 불법 매립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9,68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및 과태료 총 9,68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936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936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8.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9,489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및 가산금 총 79,489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5,897천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5,897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건 관련 보상금 기각

전원위원회(2017. 8.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밝힌 후, ○○축협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수일 내 판매할 것으로 보이니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별도 증거자료 없이 유선전화로 신고한 신청인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지만,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①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침해행위 내용, ④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와 함께 ⑤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증거자료 없이 유선으로 신고한 신청인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기각

전원위원회(2017. 10.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된 것) 제2조 제7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4호로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된 것) 제3조의2에 규정된 내부 공익신고자는 ① 근무관계, ② 계약관계, ③ 계열회사 근무 등 사실상 영향력 관계, ④ 그 밖에 지도, 관리·감독 관계 등에 있는 자로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하나, 신청인은 내부 공익신고자 지위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3,150천 원이 부과·징수되었으나,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와 근무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내부 공익신고자 지위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3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의료기관 두 곳을 개설·운영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방사선 촬영 등의 행위를 하게 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3,55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및 추징금 총 43,55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8,710천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8,71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3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제약회사가 거래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유도하였다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22,553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파신고업체에 벌금 및 추징금 총 622,553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공익침해행위 가담에 따른 감액 10%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12,006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12,006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기관 석면조사 미 실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3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9,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9,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80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1,8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3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위험물인 메탄올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소화전 작동 불량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4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및 벌금 총 3,4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680천 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6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산지 불법전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0. 3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3,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13,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600천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2,6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 제4장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포상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 보존 및 제조 기준·규격 위반」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2. 13.)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소맥전분 제조업체가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밀가루를 소맥전분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 영업정지 및 시설개수명령이 처분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영업정지 7일 및 시설개수명령이 부과되었고, 피신고업체 직원 등 7명이 기소되었으며, 소맥전분이 과자, 라면 등의 주원료인 점에 비춰볼 때 국민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것이므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보상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기준 중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액을 5,000천 원으로 심의·의결함.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의약품등의 제조 및 생산 관리의무 위반」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의약품 원재료를 중간 가공하는 업체가 의약품 원료인 인도산 염산바미필린을 수입하여 정제하지 않고 서류상 정제한 것처럼 꾸며 제약회사에 납품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제조업무 정지 4개월 15일이 처분된 것이므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보상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기준 중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액을 3,500천 원으로 심의·의결함.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3,5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선박용 물건 정비인력 지정요건 미달」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팽창식 구명뗏목 지정정비사업자가 구명뗏목 정비 및 선박 탑재 시 정비자격이 없는 자에게 정비하도록 하고, 현장에 입회하지도 않은 자가 정비기록지 등에 확인 서명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 효력정지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효력정지 3개월이 처분된 것이므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보상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기준 중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액을 3,000천 원으로 심의·의결함.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3,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 제4장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구조



국민권익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전원위원회(2017. 12.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신청인을 고소·고발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병원비, 이사비용 등 총 867,840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이사화물 운송견적서 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병원비와 이사비용의 경우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신청인이 피신고자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카드매출 전표와 입금표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증빙은 신청인이 피신고인과 공익신고일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추정되므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청인이 요청한 구조금 신청 금액 중 구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867,840원임.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금 867,840원 구조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
- **착안사항** : 구조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5장

참고 자료

- 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 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이해

1. 부패행위 신고제도

①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의의

- 부패행위 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용기이며,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임
- 부패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2조, 제29조, 제55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임

② 부패신고 주체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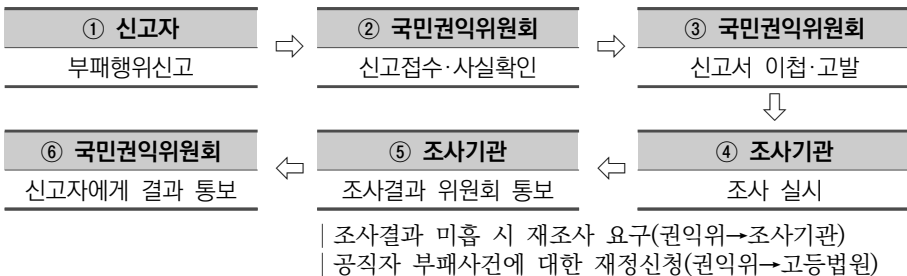
- (주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방법)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②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③ 부패신고 대상 : 부패행위

-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음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④ 부패신고 처리절차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①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권익위법 제62조제2항)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2조제3항)
 -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2조제8항)

②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신고로 인해 신고자·친족·동거인 및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4조의2제1항)
- 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권익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③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권익위법 제64조제1항)
-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증인 심문 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권익위법 제64조의2제3항)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④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책임의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 (권익위법 제66조제1항, 제2항)

- (직무상 비밀의무 준수 배제) 신고한 경우 다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권익위법 제66조제3항)
- (불이익 추정) 신고한 뒤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권익위법 제63조)
- ※ 불이익 추정 관련 규정은 신고자의 경우에만 적용됨

3.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① 신고 보상금 제도의 의의

-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손해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신고 활성화와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권익위법 제68조제2항~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83조를 법적 근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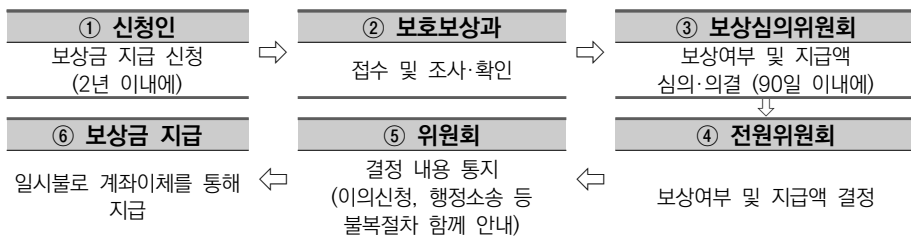
② 보상금 지급 요건

- 보상금의 지급은 ①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②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③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가능함
- 이때,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의 종류 (시행령 제72조)

- ▶ 물수 또는 추정금의 부과
-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③ 보상금 지급 절차



4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 고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 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 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 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 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감액 사유	▶ 부패행위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부패신고의 정확성 정도 ▶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부패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지급 제한 사유	▶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공제 사유	▶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①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②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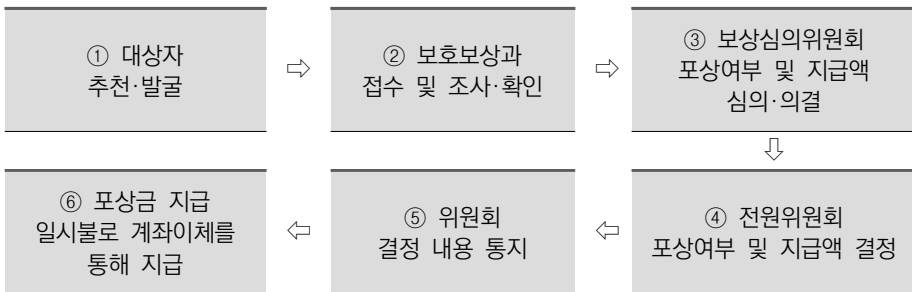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금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4.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① 포상금 제도의 의의

- 보상금의 경우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공익 증진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 개선
-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법적 근거로 함

② 포상금 지급 절차



③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기준

❖ 지급요건	❖ 지급기준
▪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자진 신고의 경우 제외) ▪ 자진 신고의 경우,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 금액의 30% 지급 ▪ 감액, 지급 제한 등은 보상금 지급 규정 준용

〈참고〉 포상금 지급 사유

-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1.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①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를 할 수 있음
 -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기명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공익신고기관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 국회의원
- ◆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별첨〉 공익신고 대상법률
-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③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 (조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 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 ※ 대표자들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

-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①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

②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③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 요구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규정은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3.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① 보상금 지급

-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 벌칙·통고 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 ◆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 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지급금액)**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초과액 ~최고 30억원

2 포상금 지급

-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 사유

-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 외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 원상회복 관련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건 강〉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2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	건강검진기본법(보건복지부)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6	검역법(보건복지부)
7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8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9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10	국민영향관리법(보건복지부)
11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13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4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16	먹는물관리법(환경부)
17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1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19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0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2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2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
24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25	식물신품종 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6	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28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29	약사법(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0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3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32	위생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35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3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7	의료법(보건복지부)
38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39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4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43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44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5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6	지역관리법(보건복지부)
4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48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49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5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라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청)
52	학교급식법(교육부)
53	학교보건법(교육부)
54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55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5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보건복지부)
〈안 전〉	
1	개항질서법(해양수산부)
2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3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4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5	건축법(국토교통부)
6	건축사법(국토교통부)
7	경비업법(경찰청)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9	공연법(문화체육관광부)
10	광산보안법(산업통상자원부)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2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14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16	낙시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17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자치부)
18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19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민안전처)
2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22	도로교통법(경찰청)
23	도로법(국토교통부)
24	도선법(해양수산부)
25	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28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3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31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32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3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
34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35	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36	소방시설공사사업법(국민안전처)
3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38	송유관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39	수난구호법(국민안전처)
40	수상레저안전법(국민안전처)
4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43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4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46	어선법(해양수산부)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4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4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50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51	위험물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2	유선 및 도선사업법(국민안전처)
53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54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5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국민안전처)
56	재해구호법(국민안전처)
5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58	전기공사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59	전기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6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1	전력기술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2	정보통신공사사업법(미래창조과학부)
63	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부)
64	주택법(국토교통부)
65	지진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66	집단에너지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67	철도안전법(국토교통부)
68	청소년활동진흥법(여성가족부)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7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국민안전처)
7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74	항공법(국토교통부)
75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
76	항로표지법(해양수산부)
77	항만법(해양수산부)
78	해사안전법(해양수산부)
79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환 경〉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3	골재채취법(국토교통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9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10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
12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13	독도 등 도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15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 환경부)
19	사방사업법(산림청)
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청)
21	산림보호법(산림청)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23	산지관리법(산림청)
2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26	소하천정비법(국민안전처)
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8	수도법(환경부)
29	수산업법(해양수산부)
30	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32	습지보전법(환경부, 해양수산부)
33	악취방지법(환경부)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35	어장관리법(해양수산부)
36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3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별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9	육외광고물 등 관리법(행정자치부)
40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환경부)
41	자연공원법(환경부)
42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4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47	지하수법(국토교통부)
48	초지법(농림축산식품부)
49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50	폐기물관리법(환경부)
5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52	하수도법(환경부)
53	하천법(국토교통부)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7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5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
59	환경보건법(환경부)
6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61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소비자 이익〉	
1	개인정보보호법(행정자치부)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	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6	고령친화산업진흥법(보건복지부)
7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9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10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11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13	금융지주회사법(금융위원회)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5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6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17	말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1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20	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2	보험업법(금융위원회)
23	복권 및 복권기금법(기획재정부)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보건복지부)
2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28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
30	산업표준화법(산업통상자원부)
31	상표법(특허청)
32	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
33	새마을금고법(행정자치부)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35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3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자원부)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39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40	아이돌봄 지원법(여성가족부)
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42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
43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45	외국환거래법(기획재정부)
46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4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48	유아교육법(교육부)
49	은행법(금융위원회)
5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1	임대주택법(국토교통부)
52	입양특례법(보건복지부)
53	자격기본법(교육부, 고용노동부)
5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5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56	전기통신사업법(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5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5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미래창조과학부)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6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62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63	철도사업법(국토교통부)
64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6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6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67	항만운송사업법(해양수산부)
68	해운법(해양수산부)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공정한 경쟁〉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	경륜·경정법(문화체육관광부)
3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무부)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13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보건복지부)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15	한국마사회법(농림축산식품부)
〈이에 준하는 공익〉	
1	방위사업법(국방부)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국방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벤처기업부)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이 용 안 내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우 편 | (03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팩 스 | 044) 200-7972

인 터 넷 |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방 문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전 화 상 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제16집)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발행일 2018년 7월
인쇄처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Tel. 02) 868-6854

본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044)200-7696 Fax:044)200-7943